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The Analysis on the Financial Crisis of the United Nations.—

崔 鐘 起

— 目 次 —

I. 序 論

- (1) UN의 財務行政面의 特徵

II. 本 論

- (1) 自發的計劃의 經費
- (2) 國際聯合非常軍(UNEF)의 經費
- (3) 國際聯合「콩고」作戰軍(ONUC)의 經費

III. 問題點과 結語

I. 序 論

(1) UN의 財務行政面의 特徵

國際聯合(the United Nations)은 憲章에 規定한 바와 같이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함을 目的으로 하여 發足한지 이제 19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UN이 國際社會에 寄與한 여러 가지 業蹟은 영원히 人類의 腦裡 속에 아로새겨 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東·西兩大陣營間의 對立은 激化 一路에 이르렀으며, 마침내는 國際聯合 財政面의 危機에 까지 몰아넣게 되었다.

111個國의 大世帶로 肥大하여진 UN은 國際平和維持라는 大課業을 遂行하는 途上에 있어서 財政上의 破綻에 面對되어, UN의 存立에 까지 큰 威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UN의 財政面의 危機에 까지 몰아넣게 한 諸要因을 簡略히 檢討코자 한다.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는 오늘날 國際政治上의 重要한 問題의 하나로서 摳頭되었고, 그것은 UN이라는 國際機構를 運營해 나가는 原動力이 다름아닌 UN의 財政 즉 諸經費에 充當하는 資金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機構運營의 動脈이라고 할 수 있는 資金이 課業遂行에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이다.

研究論文

國際聯合에는豫算을 準備하는 財務長官이 없으며,⁽¹⁾ 事務總長이豫算案을 마련하여 國際聯合의 財政面에 對한 責任을 지고 있다.⁽²⁾

國際聯合의豫算案은 總會에서 審議·承認되며, 同經費는 總會에서 割當한 分擔金에 依하여 加盟國에 각各負擔되는 것이다.⁽³⁾ 그러나 國際機構의 經費의 支出에 對하여는 嚴格하게 抑制하려고 하지 않는 傾向이 있으며, 特別한 目的에 依한 追加豫算案을 作成하여 總會에서 投票에 붙이는 境遇가 許多하다.⁽⁴⁾

그리고 國際聯合의豫算是 政治的인 要因에 依하여 浪費가 甚하다. 즉, 經濟的으로 經費를 節約하기가 困難하므로 各項目의豫算策定에 있어서 高額으로策定되어通過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財政面의 浪費가 甚한 要因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i) 行政當局은 納稅者(the taxpayer)에 依하여 管理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加盟國에게 割當된 寄附金인 分擔金을 納付하지 않아도 이것을 拘束·起訴할 수가 없다.

(ii) 物品價格은 最低價格으로 見積하지 않고 反對로豫算에策定된價格에 알맞는 見積價格으로 編成하고 있다는 점이다.

(iii) 國際機構에서는 外部로 부터 資金을 借用할 수 없다.

(iv) 萬一豫算執行에 있어서 殘額이 생기게 되면, 그 殘額은 어떠한 形態로 든지 加盟國에返還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國際行政家들은 殘額을 加盟國에게返還하려 하지 않고, 加盟國中에서 適期에 分擔金을 納入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臨時 그 殘額으로 充當하려고 하는 것이다. 大部分의 國際機構는 憲章 또는 規則을 制定하여 加盟國中 適期에 分擔金을 納付하지 않는 境遇에, 어떤 制裁를 加하여 分擔金納付를 促求하고 있으나 實效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⁵⁾

이러한 事態에 對備하기 위하여 國際機構에서는 各加盟國에 定期豫算과는 別途로 運營資金(the Working Capital Fund)이라는 計定을 設定하고, 各國家別로 分擔金을 蔡出케 하

(1) A. Loveday,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6, p. 313.

崔鍾起, “國際聯合行政上의 諸問題”, 國際法學會論叢, 第5卷第1號, 1960年4月, 大韓國際法學會刊, p. 42.

崔鍾起, 國際行政, 서울:法文社, 1963, p. 307.

(2)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United Nations*, Art. III, 3.1.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YBUN), 1950, p. 167.

J. David Singer, “The Finances of the League of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l Org.), Vol. XIII, No. 2, Spring 1959, p. 257.

Loveday, *Ibid.*, pp. 313—314.

(3) 憲章第17條.

(4) Loveday,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op. cit.*, pp. 314—315.

(5) Loveday, *Ibid.*, p. 325.

崔鍾起, 國際行政, 上揭書, 308面.

여 資金을 마련하는 것이다. 定期豫算에 充當할 資金이 加盟國으로 부터 適期에 納付되지 않을 때는, 臨時로 그 運營資金으로 充當한 後에 償還하게 되는 것이다.

國際聯合을 運營하는 資金의 捏出은 各 加盟國의 經濟的 實情을 參酌하여 分擔金을 酿出 켜 하는 것이 그 特色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國際聯合의豫算은 各 加盟國의 代表들로 構成된 總會에서 論議되는 것으로, 國家에서와 같이 國民의 代辯人인 國會議員들이 國民의 稅金을 節減하려고 努力하는 態度와 같은 것은 國際行政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한 點으로 國際機構의 財務行政은 國家行政에서 보다 資金浪費가甚하다는 非難을 받게 되는 것이다.

各 加盟國의 分擔金의 酿出에 依한 資金과 各 國際機構마다의 刊行物 등 販賣代金에 依한 小規模의 收入金으로 機構運營의 資金에 充當시키고 있다.

그러나 國際機構의豫算規模는 어떤 加盟國의 一個國家의豫算規模보다 훨씬 小規模이며 오직 加盟國의 國際的인 協助로서 만이 國際機構의 財務行政이 圓滑히 執行될 수 있을 것이다.⁽⁶⁾

이와 같은 國際聯合의 財政問題는 憲章 第17條・第18條・第19條에 각각 規定하고 있다.⁽⁷⁾

同 第17條에 依하면 (i) 總會는 本機構의豫算을 審議하고 이를 承認한다. (ii) 本機構의 經費는 總會의割當에 따라 各 加盟國이 負擔하며, (iii) 總會는 第57條에 記述한 專門機構와의 사이의 財政上 및豫算上の調整을 審議한 後 承認하고, '當該 機構에 勸告를 할 目的으로 專門機構의 行政的豫算을 檢查하는 것이다.

즉 國際聯合의 財政에 關하여는 總會에서 掌握하며, 全 加盟國은 資金의割當 및 支出에 있어서 一票를 갖는다는 加盟國의 主權平等原則에 依據하고 있다. 또한 總會에서 同意된 方法에 依하여 經費를 支拂한다는 國際的 義務를 各 加盟國에 負擔시키고 있는 것이다.豫

(6) 崔鍾起, 上揭書, 309面.

(7) Francis O. Wilcox and Carl Marcy, *Proposals for Changes in the United Nations*,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55, p. 420.

Leland M. Goodrich and Edvard Hambro,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ommentary and Documents*, World Peace Foundation, Boston, 1949, pp. 183—191, 324—350.

G.J. Mangone, *A Short History of Int'l Organization*, McGraw-Hill Book Co., New York, 1954, p. 175.

C. Eagleton, *Int'l Gov't*, 3rd edition, The Ronald Press Co., New York, 1957, pp. 309—314. *Everyman's United Nations*, 1959, pp. 438—440.

S.S. Goodspe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t'l Organizat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59, pp. 126—128.

A.N. Holcombe, ed., *Strengthening the U.N.*, Harper and Brothers, New York, 1957, p. 10, 51—52.

H.G. Nicholas, *The United Nations: As a Political Institut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59, pp. 113—114, 119.

John G.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p. 5.

研究論文

算上の 모든決定은 總會의 3分의 2의 多數決에 依하여서만 承認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聯合은 定規豫算과 別途로 設置된 國際聯合非常軍(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UNEF) 및 「 cong」作戰(Opération des Nations Unies au Congo: ONUC) 等의 經費支出로 因한 財政上의 危機는 國際聯合의 存亡에 까지 미치는 問題로 發展되었다.⁽⁸⁾ 그것은 또한 國際政治上의 새로운 難題로 크게 注目을 받게 되었으며⁽⁹⁾, 이러한 財政上의 危機를 如何히 克服할 것인가가 오직 國際聯合에 놓여진 큰 課題로서 全 加盟國의 協助로서 만이, 이와 같은 財政上의 難關은 打開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國際聯合의 定規豫算外에 마련된 이와 같은 國際社會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諸經費支出에 따르는 諸問題點을 簡略히 더듬어 보기로 한다.

II. 本論

1945年에 發足한 國際聯合의 첫해인 1946年度의 定期豫算額 1,939 萬弗⁽¹⁾을 51個國이 負擔하였던 것이다. 1963年度는 111個國의 加盟國이 93,911,050 弗⁽²⁾을 負擔하므로서 發足當時보다 倍以上의 會員國이 增加됨에 比하여 同 定期豫算額은 約 4倍로 肥大하여 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定期豫算額에 對한 財源充當은 各 加盟國으로 부터 酿出되는 寄附金으로充足되어 別困難한 問題는 起起되지 않았다.⁽³⁾

오늘날 國際聯合의 定期豫算額과 專門機構, 中·近東地域 및 平和維持를 爲한 「 cong」作戰費에 對한 賦課와 特別基金(the Special Fund) 및 擴大技術援助計劃(the Expanded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과 같은 自發的 寄附金 等을 包含하고 있다. 이와 같은 諸經費는 1962年度에는 4億 8,000 萬弗⁽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金額은 加盟國政府가 國際聯合

(8)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bid.*, p. 4.

"Issue before the Seventeenth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39, Sept. 1962, p. 184.

United Nations Review (UNR), Vol. 9, No. 9., Sept. 1962, pp. 34—35.

UNR, Vol. 9, No. 1, Jan. 1962, pp. 24—25.

(9) Norman J.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p. 531.

(1)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YBUN), 1946—47, p. 656.

Everyman's United Nations, *op. cit.*, p. 438.

Eugene P. Chose, *The United Nations in Action*,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50, p. 352.

(2) *UNR*, Vol. 10, No. 1, Jan. 1963, *op. cit.*, p. 106.

(3) "Issue before the Seven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39, Sept. 1962, *op. cit.*, p. 184.

The New York Times, (NYT), 16 July 1962.

崔鍾起, 國際行政, 上揭書, p. 411, 425.

國際聯合의 定期豫算額에 對한 加盟國의 分擔金 酿出實績은 꼭 良好한 편이다. 1959年度 賦課額은 99%가 徵收되고, 1960年度는 99.3%, 그리고 1961年度에는 92.99%가 各各 徵收되었다.

(4)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31.

活動에 參與하기 爲한 各種 經費를 모두 綱羅한 것은 아니다.

國際聯盟時의 1935 年度豫算 6,128,000 弗⁽⁵⁾에 比하면, 國際聯合의 經費는 非老大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으나, 加盟國政府의 1 個國의 豫算規模에 比하면, 그 規模는 貧弱하다는 것은 明白해 진다. 즉, 1870 年 國際社會의 國家豫算規模가 50億弗이던 것이 오늘날에는 年 2,000 億弗로 增大되었으며, 이것은 每 25 年마다 3 倍씩 增加된 것이고, 同 期間中 國際機構의 年間豫算도 100,000 弗로 부터 1 億弗로 增額되었는데, 이것은 每 25 年마다 10 倍씩 增額된 셈이 된다.⁽⁶⁾ 이와 같이 國際機構에 對한 豫算規模도 漸次 增加一路에 있다는 傾向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國際聯合 定期豫算額에 對한 賦課의 樣相은 그 豫算額의 大部分의 比率은 加盟國中의 少數國家에 依하여 負擔되고 있다. 加盟國의 50%를 占하고 있는 50 個國은 全體豫算規模中 不過 3%만을 負擔하며, 5 大常任理事國을 포함한 20 個國은 全體豫算額의 90%를 負擔하고 있다. 安全保障理事會의 5 大常任理事國은 全體豫算額의 3 分의 2를 負擔하며 그中 美國은 全體豫算額中 3 分의 1을 負擔하고 있는 것이다.⁽⁷⁾

(1) 自發的計劃(Voluntary Program)의 經費

國際聯合의 定期豫算과는 別途로 加盟國의 自發的 寄附金釀出에 依한 計劃으로서 國際聯合兒童基金(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國際聯合避難民高等辦務官(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國際聯合近東「파레스타인」難民救濟機關(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 特別基金(the Special Fund) · 擴大技術援助計劃(the Expanded Programme of Technical Assistance: EPTA) 等이 있다.⁽⁸⁾ 그리고 自發的 計劃에 따르는 國際避難民機構⁽⁹⁾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 및 國際聯合韓國復興團⁽¹⁰⁾ (the United

(5) Padelford, *Ibid.*, p. 532.

E.P. Walters, *A Short His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Oxford Univ. Press, London, 1960, pp. 130—131.

F.L. Schuman, *Int'l Politics*,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58, p. 214.

C. Eagleton, *Int'l Gov't*, The Ronald Press Co., New York, 1957, p. 256.

(6) Quincy Wright, "Modes of Financing Unions of States as a Measure of Their Degree of Integration," *Int'l Organization*, Vol. XI, No. 1, Winter 1957, p. 35.

(7)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Jan. 1961, p. 12.

(8) Stoessinger, *Ibid.*, p. 33.

(9) *Everyman's United Nations*, *op. cit.*, p. 22, 325, 450.

Daniel S. Cheever and H. Field Haviland, Jr., *Organizing for Peace*, Houghton Mifflin Co., The Riverside Press, Cambridge, Mass., 1954, p. 202, 657.

Inis L. Claude, Jr., *Swords into Plowshares: The Problems and Progress of Int'l Organization*, Random House, New York, 1956, p. 392, 398.

Louise W. Holborn, *The Int'l Refugee Organization: Its History and Work, 1946—1952*, Oxford Univ. Press, London, 1956, p. 559, 565.

研究論文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等은 1952 年과 1958 年에 그任務를 다하고完全히解體되었다.⁽¹⁰⁾

이와 같은自發的計劃에對한經費를支拂할수있는能力과意思가있는國家가特別한各計劃을支持하여寄附金을醵出하는것은自由스러운것이다. 이러한自發的計劃에對한豫算額中美國은50%乃至70%를各各分擔하고있다.⁽¹¹⁾自發的分擔金은國際聯合定期規豫算外의諸計劃에對한援助를提供할수있는唯一한方法이며, 이러한諸資金의規模과用途에對하여批判이加하여지고있으나,行政的目的에依한過度의支出뿐만아니라,同計劃에依한努力의重複과重疊이있는것이라고指摘되고있다.⁽¹²⁾

그러나同自發的計劃을支持하는것은順坦치않았다. 그例로서는1954年9月現在加盟國60個國中14個國만이1年間前記한4個의自發的計劃에對한分擔金을各各支拂할것을約束한바있었다.⁽¹³⁾

「UNICEF」와技術援助計劃은多數國家에依하여 눈으로볼수있는直接的利益을隨伴하는普遍的魅力을實質적으로갖고있는데反하여, UNRWA 및 UNKRA와같은것은主로地域的,地方的效果를가지며,比較的少數의國家에만눈에보일수있는惠澤을가져온다는점을留意하지않으면안된다.⁽¹⁴⁾

특히自發的計劃에對한政府의寄附金納付에있어서,蘇聯과東歐諸國은1953年까지도이問題에對하여는無視하였다. 「스타린」(Stalin)의死亡後,蘇聯은몇개의專門機構에加入하였을뿐만아니라「UNICEF」및「EPTA」에寄附金을納付하였으며, 1959年에는特別基金에參與하였다. 每年東歐諸國에서이3個計劃에寄附金을納付하는規模는全體豫算額의5%未滿을負擔하며, 그것은國際聯合定期豫算額의分擔率에對한3分의1程度를負擔하는셈이된다.⁽¹⁵⁾

(10) *Everyman's United Nations*, *Ibid.*, pp. 189, 296, 324. Goodspe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t'l Organization*, *op. cit.*, p. 465, 467.

Army Vandenbosch and Willard N. Hogan, *Toward World Order*,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63, p. 215.

Francis O. Wilcox and Carl M. Marcy, *Proposals for Changes in the United Nations*,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55, pp. 422—423, 436.

(11) Wilcox and Marcy, *Ibid.*, p. 423.

(12) Wilcox and Marcy, *Ibid.*, pp. 434—435.

(13) UNGA: 9th Sess., *Report of the Negotiating Commission Extra-Budgetary Funds*, Doc./A 2730, 20 Sept. 1954.

(14) Stoessinger, "Financing the U.N.",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34.

崔鍾起, 國際行政, 前揭書, 413面. UNKRA에對하여는1953年UN總會에서壓倒的多數로서承認한2億600萬弗의目標額에도不拘하고,各國政府에서의納付額은1954年9月까지總額1億1,200萬弗이었다. 資本醵出의不足으로UNKRA는認可된1953年—54年度計劃인1億3,000萬弗에서8,500萬弗로節減하게되었고,縮少된計劃에必要한資金中1954年9月까지徵收된것은그半額에未達이었다. 이機關에서받은援助의95%는4個國政府로부터提供받은것이었다.

(15) Stoessinger, *Ibid.*, pp. 50—51.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그러나 오늘날 自發的 計劃에 關한 決定은 세가지 重大한 利點이 있다. 첫째로, 各 加盟國은 여러가지 計劃에 對한 關心과 支拂能力에 따라 每年 希望하는 計劃만을 分擔할 수가 있다. 둘째로, 自發的 計劃에 依하여 別個로 資金을 調達하므로 定期豫算을 몇년間에 걸쳐 支拂하는 것은 加盟國에 經濟的인 支拂能力을 超過하는 水準까지 增大되지는 않는다. 셋째로, 美國에 關한 限 어떤 自發的 計劃이 繼續的인 義務가 되지 않는다면, 이豫算의 3分의 1以上을 分擔하여도 좋다는 意思가 議會에 依하여 示唆되고 있다.⁽¹⁶⁾

各國政府의 自發的 寄附金에 依해 推進되고 있는 經費는 꾹 增加되어 오늘날 全體 國際聯合經費의 43%에 該當되고 있다.⁽¹⁷⁾ 이 計劃에 對한 諸經費는 1956年以後 國際聯合定期豫算規模의 2倍에 이르고 있다.

◇ 國際聯合豫算 (1956—1962)⁽¹⁸⁾

1956年	加盟國
定期豫算.....	\$ 48,330,000.....76
1957年	
定期豫算.....	49,088,050
UNEF.....	<u>15,028,988</u>
計.....	64,117,038.....76
1958年	
定期豫算.....	51,502,289
UNEF.....	<u>25,000,000</u>
計.....	76,502,289.....83
1959年	
定期豫算.....	61,500,000
UNEF.....	<u>15,205,000</u>
計.....	76,705,000.....82
1960年	
定期豫算.....	58,347,514
UNEF.....	<u>20,000,000</u>
UNOC	<u>48,500,000</u>
計.....	126,847,514.....82
1961年	
定期豫算.....	69,399,839
UNEF.....	<u>19,000,000</u>
UNOC	<u>120,000,000</u>
計.....	208,399,839.....99

(16) Stoessinger, *Ibid.*, p. 34.

(17)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33, 535.

研究論文

1962年

定期豫算	82,144,740
UNEF	19,500,000
UNOC	120,000,000
計	221,644,740

(※ 16次 總會時의 加入國을 不包含)

한편 自發的計劃에 對한 美國의 寄附金納付額은 全體額中에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 自發的計劃에 對한 美國의 寄附金納付 比率

(1946—1961)

兒童基金	62.1%	UNHCR	38.3%
UNRWA	68.4	Hungary 難民을 위한 特別基金	51.3
UNKRA	65.1	UN 特別基金	41.0
EPTA	49.4	Congo 외 對한 經濟基金	65.7
UN 避難民基金	35.5	Algeria 難民을 위한 基金	49.6

그런데 이와 같은 自發的 計劃인 UNICEF 와 EPTA 및 特別基金 等은 國際聯合加盟國의 大部分 國家가 支持하고 있으며, 또한 各加盟國中에서도 同計劃을 定期豫算속에 吸收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도 開陳된 바 있다. 그러나 蘇聯·佛蘭西 및 中國 等은 이 計劃에 對하여는 少額을 負擔하고 그 外는 大部分 美國이 負擔하고 있는 實情이다.⁽¹⁹⁾

國際聯合의 自發的 計劃에 따르는 1960 年度의 特別計劃에 對한 主要 各國의 分擔額과 分擔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1960年 國際聯合 特別計畫에 따르는 主要國의 自發的分擔金 (單位 : 1.000弗)

區分 國家名	UNICEF		UNRWA		UNHCR		EPTA		Spec. Fund	
	額	%	額	%	額	%	額	%	額	%
아프카니스탄	10.0	0.05	—	—	—	—	12.5	0.04	9.0	0.02
알바니아	—	—	—	—	—	—	2.0	+	2.0	+
濠洲	537.6	2.50	196.0	0.58	112.0	1.82	625.0	1.80	—	—
벨지움	160.0	0.74	20.0	0.06	200.0	3.25	300.0	0.88	100.0	0.26
부라질	478.0	2.22	—	—	30.0	0.49	832.4	2.44	208.1	0.54
버마	56.0	0.26	1.0	+	5.5	0.09	35.0	0.10	10.0	0.03
카나다	670.8	3.12	3,060.0	9.10	299.0	4.86	2,000.0	5.85	2,000.0	5.19
칠리	80.0	0.37	—	—	8.3	0.13	73.3	0.21	97.1	0.25

(18) Padelford, *Ibid.*, p. 534.

(19)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51.

(20) Stoessinger, *Ibid.*, pp. 48—49.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中國	15.0	0.07	—	—	1.0	0.02	20.0	0.06	20.0	0.05
*콩고(Braza.)	3.9	0.02	—	—	—	—	—	—	—	—
체코슬라비아	34.7	0.16	—	—	—	—	69.4	0.20	69.4	0.18
佛蘭西	748.2	3.48	182.8	0.54	512.2	8.32	1,543.8	4.52	1,072.1	2.78
* 가본	5.0	0.02	—	—	—	—	—	—	—	—
* 西獨	592.2	2.77	238.1	0.71	209.5	3.40	1,428.6	4.18	1,904.8	4.94
가나	16.8	0.08	3.0	0.01	3.0	0.05	66.2	0.19	28.0	0.07
하이티	—	—	—	—	—	—	14.4	0.04	22.0	0.06
* 香港	3.5	0.02	—	—	—	—	—	—	—	—
印度	629.8	2.93	13.2	0.04	—	—	750.0	2.20	1,750.0	4.54
印尼	100.0	0.46	—	—	—	—	40.5	0.12	16.3	0.04
伊太利	288.0	1.30	80.0	0.24	212.3	3.45	500.0	1.46	600.0	1.66
日本	150.0	0.70	12.5	0.04	2.5	0.04	135.0	0.40	480.0	1.25
* 韓國	2.0	0.01	—	—	—	—	3.5	0.01	10.0	0.03
리비아	7.0	0.03	—	—	—	—	20.0	0.06	20.0	0.05
멕시코	500.0	2.32	—	—	—	—	121.0	0.35	34.0	0.09
뉴질랜드	212.0	0.98	168.0	0.50	84.0	1.36	210.0	0.61	70.0	0.18
노웨이	67.2	0.31	42.0	0.12	98.0	1.59	548.8	1.61	420.0	1.09
瑞典	269.1	1.25	35.0	0.10	305.3	4.96	465.1	1.36	465.1	1.21
泰國	78.6	0.37	—	—	3.1	0.05	38.1	0.11	160.0	0.16
蘇聯	500.0	2.32	—	—	—	—	1,000.0	2.93	1,000.0	2.59
英國	938.0	4.36	5,624.0	16.72	504.0	8.19	3,000.0	8.78	5,000.0	12.97
美國	12,000.0	55.81	23,000.0	68.39	2,493.4	40.51	14,655.4	42.89	15,824.8	41.05
유고슬라비아	200.0	0.93	4.00	0.12	—	—	125.0	0.37	175.0	0.45
計	21,517.2	100.00	33,630.5	100.00	6,154.8	100.00	34,165.4	100.00	38,547.7	100.00
他收入	4,250.0	—	1,791.2	—	9,779.1	—	—	—	—	—
總計	25,767.2	—	35,421.7	—	15,533.9	—	—	—	—	—

(* : 國際聯合 未加盟國, + : 0.01% 以下)

즉, 이 特別計劃에 따르는 自發的 計劃에는 國際聯合에 加入되지 않는 國家도 參與하고 있으며, 大韓民國도 UNICEF 에는 2,000 弗(全體의 0.01%), 擴大技術援助計畫(EPTA)에는 3,500 弗(0.01%) 및 特別基金에는 100,000 弗(0.03%)를 각각 負擔하고 있다.

또한 國際聯合에 對한 個人의 寄附(Public donations)는 特別히 國際聯合總會에서 承認되지 않는限, 이것을 受諾할 수는 없다. 個人寄附의 大部分은 圖書館建物 建築費에 對한 美國의 「포드」財團(the Ford Foundation)으로 부터의 寄附와 非政府民間機構인 教會·學校 및 市民들로 부터의 寄附金에 依하고 있다. UNICEF 및 避難民救護를 為한 高等辦務官室活動 等의 定規收入은, 이 民間團體 等의 寄附金으로서 그 一部를 充當하고 있는 것이다.⁽²⁰⁾

한편 1962年 11月 30日 國際聯合 總會에서는 1963年度의 擴大技術援助計劃 및 國際聯

研究論文

合特別基金에 對한 102 個國의 分擔金을 決定하였다. 擴大技術援助計劃에는 49,082,206 弗, 特別基金에는 69,705,981 弗로 總計 118,788,187 弗로 策定하였다.⁽²¹⁾

1963年度 EPTA 와 UNSF 分擔額

國家名	區分	EPTA \$	Spec. Fund \$	總 \$	計
아프카니스탄		16,500	13,500		30,000
베	마	40,000	35,000		75,000
中	國	21,000	21,000		42,000
佛	蘭	1,852,555	1,072,079		2,924,634
西	獨	2,650,000	5,350,000		8,000,000
印	度	850,000	2,150,000		3,000,000
伊	太	900,000	1,350,000		2,250,000
日	本	450,000	1,596,037		2,046,037
韓	國	8,000	15,000		23,000
瑞	典	1,500,000	5,000,000		6,500,000
蘇	聯	2,000,000	1,000,000		3,000,000
英	國	3,750,000	6,250,000		10,000,000
美	國	21,132,882	29,742,392		50,875,274
	總 計	49,082,206	69,705,981		118,788,187

이와같이 國際聯合과 專門機構에 加入하고 있는 國家는 各種 自發的 計畫에 對한 自發的 寄附金을 納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國際聯合과 同專門機構의 定期豫算과는 別途의 計定이므로 各 國家는 同自發的 計畫에 따르는 寄附金納付는 義務的인 것인 아니라, 道義的

(21) Ernest A. Gross, *The United Nations: Structure for Peace*, Harper and Brothers, New York, 1962, p. 26, 30.

Clark M. Eichelberger, *U.N.: The First Fifteen Years*, Harper and Brothers, New York, 1960, pp. 11, 28—29.

Inis L. Claude, Jr., *Power and Int'l Relations*, Random House, New York, 1962, p. 262, 283.

Frederick L. Schuman, *Int'l Politic*,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58, p. 423.

Wilder Foote, ed., *Servant of Peace*, Har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62, p. 12, 18.

H.G. Nicholas, *The United Nations: As a Political Institution*,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59, p. 59, 61—62.

Katharine Savage, *The Story of the United Nations*, Henry Z. Walck, Inc., New York, 1962, p. 62, 181—185.

Sydney D. Bailey, *The General Assembly*, 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60, p. 77.

Alexander Dallin, *The Soviet Union at the United Nations*, 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62, p. 105.

Andrew Gyorgy and Hubert S. Gibbs, ed., *Problems in Int'l Relations*, 2nd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2, p. 341.

10個國은 Brazil, Canada, Colombia, Denmark, Finland, India, Indonesia, Norway, Sweden, 및 Yugoslavia 이다.

Leland M. Goodrich, *The United Nations*, Thomas Y. Crowell Co., New York, 1959, p. 97, 182, 184. Stoessinger, *Ibid.*, p. 15.

William R. Frye, *A United Nations Peace Force*, Stevens and Sons, Ltd., London, 1957, pp. 2—3.

인 것으로 國際聯合加盟國에 對한 強制的인 韻出義務는 負荷되지 않는다. 오직 各 國家의 自發的인 協助에 期待할 때이다.

(2) 國際聯合非常軍(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UNEF)의 經費

國際聯合非常軍이라는 것은 國際聯合을 為한 政治的・軍事的 目的에 依하여 그 設置가 受諾되므로서 國際軍이 構成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單一勢力에 依하여 支配되지 않는 國際的인 軍隊를 構成하였다. 國際聯合은 처음으로 이와 같은 國際軍의 經費를 世界社會의 各加盟國家에 賦課하였다. 1956年 11月 2日 「카나다」의 「피어슨」(Lester B. Pearson)氏가 總會에서 主張한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為하여서는 國際聯合軍을 通하여서 確保할 수 있다는 提案이 別反對 없이 採擇되었다. 그리하여 6,000名의 軍人을 10個國으로 부터 募集하여 行動을 開始하였다.⁽²¹⁾ 그러나 이에 所要되는 財政問題는 解消되지 않았다. 事務總長 「함마술드」氏는 同年 11月 21日 國際聯合非常軍에 對한 經費는 定期豫算과는 別途인 特別計定을 設定할 것을 建議하고, 同 經費는 國際聯合의 1957年度 定期豫算額을 分擔하는 加盟國의 分擔率을 適用하여 徵收할 것을 要請하는 同時に 同 非常軍을 為하여 卽時 1,000萬弗의 資金이 必要함을 示唆하였다.

總會는 11月 26日 特別計定으로 1,000萬弗을 臨時措置로 策定하였으나, 12月 3日 事務總長은 同非常軍의 經費割當問題로 難關에 逢着하였다.

즉, 同 非常軍의 經費는 “國際聯合憲章 第17條의 内容과 範圍속의 國際聯合의 經費”임에도 不拘하고 事務總長은 이것을 特別計定으로 策定하였다. 이 提案은 第5委員會에서 贊・反兩論으로 論戰이 展開되었다.

美國代表 「존스」(Jones)氏는 (i) 總會가 事務總長에게 必要한 行政的인 權限과 執行權을 賦與하였으며, (ii) 國際聯合非常軍은 臨時의이고, 非常事態(emergency nature)에 對備한 措置이므로, 이러한 環境속에서 同 問題를 討議하는 것은 다만豫算問題만을 討議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을 強調하였다.⁽²²⁾ 그리하여 事務總長의 提議를 支持하였으며 同案은 西方側의 支持를 받았다. 그러나 蘇聯側 代表 「자르빈」(Zarubin)은 “總會 第596次 全體會議와 第5委員會 第538次 會議에서, 國際聯合非常軍의 經費는 國際聯合에 依하여 負擔되어서는 안된다. 蘇聯代表는 同作戰에 所要되는 經費는 危機를 造成한 關係國에 依하여서 負擔되어야 하며, 이에 對하여 國際聯合은 如何한 決議를 하여서도 그 自體가 拘束力を 갖지 않는다는 것을 確信한다”⁽²³⁾라고 力說하였다. 埃及代表 「엘・메시리」(El-Messiri)氏는 “侵略者는 非常軍의 모든 經費에 對하여 負擔하여야 되며, 侵略의 犠牲을 받은 埃及에 對하여 非常軍의 經費를 負擔

(22) UNGA: OR 11th Sess. 5th Committee, 1956—1957, 541st Meeting, 3 Dec. 1956, Para. 79, p. 47. Fyre, *Ibid.*, pp. 19—20.

(23) UNGA: OR 11th Sess. 5th Committee, 1956—1957, 541st Meeting, 3 Dec. 1956, Para. 3, p. 41.

(24) UNGA: OR 11th Sess. 5th Committee 1956—1957, *Ibid.*, Para. 43, p. 44.

研究論文

하라는 것은 不當한 것”⁽²⁵⁾ 이라고 強調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代表 「후세이니」(Husseini) 氏는 同 經費에 對하여는 侵略한 當事國이 負擔하여야 된다는 點을 指摘하였다.⁽²⁶⁾

이와 같은 激論이 展開된 後 第 5 委員會의 草案內容을 插入한 事務總長의 提案은 總會에서 賛成 62, 反對 8, 棄權 7 票로서 採擇되었다. 同 決議에 依하여 1,000 萬弗 內外의 非常軍經費는 加盟國政府에게 賦課시켜서 分擔金을 徵收토록 決定한 것이다.⁽²⁷⁾

同 經費에 對한 集團的인 納付責任原則이 設定된 後부터 美國代表는 1,000 萬弗 範圍內의 經費中 半額은 美國이 負擔하고, 그 殘餘額은 加盟國政府서 負擔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 賦課方式은 採擇되어 現在도 繼續되고 있다.

總會에서는 每年 非常軍經費에 對하여 同賦課方式대로 適用하고 있으며, 1957 年에는 1,500 萬弗, 1958 年에는 2,500 萬弗, 1959 年에는 1,500 萬弗, 1960 年에는 2,000 萬弗, 1961 年에는 1,900 萬弗, 1962 年에는 1,950 萬弗을 각各 策定하고 各 加盟國에 分擔金을 賦課시키었다.⁽²⁸⁾

美國과 「카나다」는 航空機 및 其他 輸送費에 依한 特別役務에 對한 債還權을 放棄할 것을 決定하였다.⁽²⁹⁾ 總會에서는 國際聯合非常軍의 經費인 1億弗에 對하여 全加盟國政府에 賦課케 한 것이나 同 賦課決定에 依하여도 同 非常軍의 經費充當은 解消되지 못하였다. 즉 賦課와 徵收는 圓滑하게 執行되지는 못하였다.

國際聯合 總會에서는 同 非常軍의 經費에 對하여 特別計定으로 承認한 賦課額은 1961 年末 까지 總計 94,233,988 弗이였는데 1961 年 7 月 31 日 現在 그中 63.68%인 60,004,406 弗만 이 徵收되었다.⁽³⁰⁾ 同 非常軍 經費의 徵收狀況을 보면 다음 「페이지」의 表와 같다.

즉 每年 全體賦課額의 3 分의 1 以上은 未納付 아니면 滯納狀態에 놓여 있었다. 同非常軍의 每年 經費의 不足額은 運營資金에 依存하여 充當되고 있다.

(25) *Ibid.*, 545th Meeting, 6 Dec. 1956, Para. 12, p. 70.

(26) *Ibid.*, 546th Meeting, 6 Dec. 1956, Para 1, p. 75.

(27)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089, XI, 21, Dec. 1956.

(28)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e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35.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18. 崔鍾起, 國際行政, 前揭書, 418 頁.

ORG: 16th Sess. Annexes, Vol. 1, 1961—1962, Agenda item 26, 13 July 1961, pp. 2—3.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16 June 1960—15 June 1961, ORG: 16th Sess. Supplement No. 1 (A/4800), p. 72.

Budget Estimates for the Financial Year 1963 and Information Annexes, GA: 17th Sess. Supplement No. 5 (A/5205), 1962, p. vi.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Sixteenth Sess., Vol. 1, 1961—1962, GA: 16th Sess. Supplement No. 17 (A/5100), 1962, p. 55, 1733 (XVI).

L.M. Goodrich and G.E. Rosner, “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Int'l Org.*, Vol. XI, No. 3, Summer 1957, pp. 427—428.

(29)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18.

(30) ORG: 16th Sess. Annexes, Vol. 1, 1961—1962, *op. cit.*, Para. 46, p. 26.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內譯 年度	賦課額	徵收額	未收額
1957年	\$ 15,028,988	\$ 10,990,057	\$ 4,038,931
1958年	25,000,000	17,712,244	7,287,756
1959年	15,205,000	10,511,585	4,693,415
1960年	20,000,000	14,941,488	5,058,512
1961年	19,000,000	5,849,032	13,150,968
總計	94,233,988	60,004,406	34,229,582

이러한 經費調達問題에 對하여 事務總長은 1959年 8月 20日字로 各 加盟國의 意見을 打診하였던 바 그中 46個國으로부터 回翰이 接受되었다. 이中 34個國은 同 非常軍의 經費를 全加盟國에 賦課시키는 것에 贊成하였다. 이 贊成國家中 (i) 26個國이 同非常軍經費에 對한 賦課率은 國際聯合豫算에 對한 賦課率을 適用할 것을 提議하였다. (ii) 8個國은 國際聯合豫算에 適用하는 規模와는 다른 規模로 同經費를 賦課할 것을 提議하였다.

한편 8個國은 그들의 最初 表明한 見解를 되풀리하면서, 同 事態를 惹起시킨 國家만이 經費를 負擔하여야 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2個國은 同 非常軍經費에 對하여 支拂能力이 없다는 것을 明記하였으며, 1個國은 純全히 自發的 寄附에 依할 것을 提議하고, 또 1個國은 第 14次 總會의 討議를 거쳐 決定할 것을 要請하였다.⁽³¹⁾

區分 國籍別	將校	他階級	計
부 라 질	39	609	648
카 나 다	86	897	983
멘 마 크	36	512	548
印 度	69	1,105	1,174
돌 웨 이	85	518	603
瑞 典	39	620	659
유고슬라비아	75	644	719
計	429	4,905	5,334

(註 : 32)

- (31) ORGA: 14th Sess. Annexes, 1959, Agenda item 28, Doc. A/4176, 10 Sept. 1959, Para. 2, p. 13.
Para. 3., 26個國의 構成國名은 다음과 같다.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Cambodia, Denmark, Dominican Republic, Ecuador, Federation of Malaya, Finland, France, India, Iran,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ortugal, Sweden, Thailand, U.S.A. 및 Yugoslavia.
Para. 4 : 8個國은 Burma, Ceylon, Cuba, Greece, Guatemala, Mexico, Spain 및 Venezuela.
Para. 5 : 8個國은 反對. Bulgaria,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Hungary, Poland, Rumania, Saudi Arabia,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및 U.S.S.R.
Para. 6 : 4個國은 支拂不能國家. Guinea, Jordan, Chile 및 Afghanistan.
Para. 7 : 7個國은 全加盟國에 賦課하는 것과 같이 自發的 寄附의 繼續을 受諾할 것을 要望하는 國家 : Belgium, Cambodia, Federation of Malaya, Guatemala, Japan, Luxembourg 및 U.S.A.
Para. 8 : 3個國은 贊成하나 國際聯合의 定期豫算에 同非常軍豫算을 包含하는데 對하여 反對치 않는 國家 : Australia, Japan 및 Netherlands.

研究論文

또한 同 非常軍에 派遣된 1959年 1月 1日 現在 各國籍別 人員을 보면 印度人이 1,174名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³²⁾

그리고 1962年度의 同非常軍 兵力은 5,300名의 將校와 他階級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規模는 1960—1961年度와 大差 없는 數値이다. 1961年 1月 1日現在 同 非常軍을 構成하고 있는 7個國家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³³⁾

國籍別	將校	他階級	計
부 라 질	40	589	629
카 나 다	84	834	916
멘 마 크	46	515	561
눌 웨 이	54	431	485
눌웨이醫務團	34	90	124
印 度	44	946	996
印 度 用役團	32	229	261
瑞 典	38	616	654
유고슬라비아	71	638	709
計	441	4,888	5,329

이와 같은 兵力維持에 必要한 經費인 特別計定의 寄附金徵收는 國際聯合加盟國中 3分의 1以上이 그들의 賦課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滯納하고 있는 것이다.

그中에서도 蘇聯團과 埃及等 諸國家는 同 非常軍經費徵收에 對하여 “侵略者가 마땅히 支拂하여야 될 것”임을 強調하고 그 負擔을 拒否하고 있는 것이다.

事務總長은 同 經費負擔이 憲章 第17條에 依據하여 國際聯合加盟國은 法的으로 分擔金에 對한 支拂義務가 있다는 것을 強力히 主張하고 있으며, 同 主張은 多數國家의 支持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을 反對 또는 疑問視하고 있는 加盟國側은 모든 國際聯合機關의 經費는 定期豫算 속에 包含되어 提出되고 있음에 比하여, 同 非常軍의 經費는 定期豫算과는 別途인 特別計定으로 策定된 것이므로, 이에 對한 分擔金納付義務는 法的으로 없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즉, 國際聯合非常軍은 安全保障理事會와는 獨立的으로 設置되었으므로 이것은 憲章의 精神을 違反하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그 原則下에 憲章을 違反하여 取하여진 作戰費에 對한 負擔義務를 지울 수는 없다는 點을 強調하였다.⁽³⁴⁾

(32) ORGA: 14th Sess. Annexes. 1959, *Ibid.*, Doc. A/4210, 10 Sept. 1959, Para. 7, p. 22.

(33) ORGA: 16th Sess. Annexes, Vol. 1961—62, Agenda item 26, p. 4.

(34) ORGA: 15th Sess. (Part 1) 5th Committee, 21 Sept.—19 Dec. 1960, 822nd Meeting, 16 Dec.

1960, Agenda item 27, Para. 16, p. 532,

Goodrich and Rosner, “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Int'l Org.* Vol. XI, No. 3, Summer 1957, *op. cit.*, p. 427.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16 June 1957—15 June 1958, G.A. 13th Sess. Supplement No. 1 (A/3844), 1958, p. 12.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그런데 國際聯合 非常軍經費에 對하여 事務總長이 定期豫算과 分離한 特別計定에 依한 充當을 試圖한 것이었다. 그當時 同 非常軍은 緊急事態로서 設置되었으므로 同 經費를 定期豫算속에 包含시킬 수 있는 時間이 없었다는 點을 들고 있다.⁽³⁵⁾ 이와 같이 非常軍의 財政面에 對한 孤立化는 事務總長이 同 非常軍의 經費가 特別한 性質의 것이었다는 것을 示唆한 것이다. 그러므로 憲章 第 17 條와 第 19 條의 適用與否에 對한 問題가 惹起될 것이다.

各 加盟國의 分擔金滯納과 不履行은 國際聯合의 財政面에 對한 難關을 招來케 되었으며, 「콩고」作戰과 함께 새로운 國際聯合財政面의 危機를 招來케 하고 있는 것이다. 1962年 12月 末까지 定期豫算額 및 同 非常軍의 賦課額과 徵收率 및 滯納狀況은 다음과 같다.⁽³⁶⁾

區分 年度	賦課額	徵收額	徵收率 %	未收額
1959年定期豫算	61,500,000.00	61,497,944.00	99.99	2,056.00
1960年 "	58,347,514.00	58,302,054.00	99.92	45,460.00
1961年 "	69,347,807.00	64,924,123.10	93.55	4,475,715.90
1960年新加入國	52,032.00	—	—	—
1962年定期豫算	74,124,117.00	60,899,485.62	82.16	13,224,631.38
UNEF 1957年	15,028,988.00	11,040,057.00	73.46	3,988,931.00
UNEF 1958年	25,000,000.00	17,740,741.00	70.96	7,259,259.00
UNEF 1959年	15,205,000.00	10,850,117.00	71.36	4,354,883.00
UNEF 1960年	20,000,000.00	15,269,623.91	76.35	4,730,376.09
UNEF 1961年	18,989,898.00	14,106,255.32	74.24	4,893,744.68
1960年新加盟國	10,102.00	—	—	—
UNEF 1962年	9,750,000.00	7,330,554.50	75.19	2,419,445.50

(3) 國際聯合「콩고」作戰軍(ONUC)의 經費

「콩고」內에서의 作戰은 國際聯合의 課業으로서의 國際的 協助에 對한 甚刻한 試鍊으로 發展되고 있으며,⁽³⁷⁾ 오늘날 國際聯合의 財政的 危機에 까지 進展되고 있는 것이다.

즉, 1960年 7月 13日과 14日 밤 安全保障理事會는 論難 끝에 事務總長에게 「콩고」政府와 協議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許容하였다.⁽³⁸⁾

(35)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19.

(36)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45. *United Nations Secretariat*, Statement on the Collection of Contributions as at 31 Dec. 1962, ST/ADM/SERB/168, Jan. 2, 1963, Table IX.

1962年度 UNEF 經費는 6月 30日까지 입.

(37) Robert L. West,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ngo Financial Crisis: [Lessons of the First Year]," *Int'l Org.*, Vol. XV, No. 4, Autumn 1961, p. 403.

(3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SCOR)*: 15th Year, Supplement for July Sept. 1960, Doc. S/4387, p. 16.

Katharine Savage, *The Story of the United Nations.*, Henry Z. Walck, Inc., New York, 1962, p. 200.

研究論文

事務總長은 國際聯合「콩고」作戰軍의 活動遂行에 있어서도 中·近東의 境遇와 같이 여러 難關에 逢着하였으며 그 複雜性은 더욱 甚하였다. 30時間 以內에 「아프리카」의 8個國과 瑞典 및 「아이랜드」로 부터 急據 軍隊가 「콩고」首都에 到着하였다. 그後 數日內에 새로운 國際聯合「콩고」作戰軍은 그 規模가 中·近東의 國際聯合非常軍 以上으로 肥大하여졌다. 事務總長 「함마술드」氏는 “國際聯合「콩고」作戰軍은 보다 龐大하고 複雜하며, 그것은 여러 國家가 參與한 까닭에 傳統의 다른 軍隊들이 協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點을 指摘하였다.⁽³⁹⁾

여러나라가 더 軍隊를 派遣할 것을 提議하였다. 「콩고」作戰軍은 7月에는 平均 1萬名이던 것이 8月에는 1萬 5,000 名, 9月에는 1萬 6,500 名으로 增加되었으며, 10月부터 12月末 까지는 29個 國家로부터 派遣된 軍隊數가 平均 2萬名으로 그 規模가 커졌던 것이다.

1960年 10月 24日 事務總長은 1960年度 「콩고」作戰軍의 經費를 66,625,000 弗로 推計하였다.⁽⁴⁰⁾ 이에 對하여 行政 및 豫算問題諮詢委員會의 審議에서 同 經費는 6,000 萬弗로 削減되었다. 事務總長은 兵力輸送費에 對하여 關係國家가 無償으로 協助하여 줄 것을 呼訴하였으며, 美國과 蘇聯政府는 이에 所要되는 1,000 萬弗과 1,500 萬弗의 그들의 請求權을 抛棄할 것임을 同委에 通報해왔다. 이리하여 第5委員會에서는 加盟國家에 對한 殘額 4,850 萬弗을 加盟國에게 如何히 그 負擔額을 割當할 것인가가 큰 問題로 되었다.⁽⁴¹⁾ 第5委員會의 討議에서는 이 問題가 比較的 順坦하게 進行되었다.

和蘭代表 「밴니어」(Bannier)氏는 그들이 確認한 作戰費를 全 加盟國이 負擔한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고 前提하면서, 同 經費는 國際聯合定期豫算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며, 同定期豫算에 對한 賦課率을 適用하는 것은 合理的인 것임을 밝히었다.⁽⁴²⁾ 「알젠틴」代表 「퀴

Foote, ed., *Servant of Peace*, op. cit., p. 12.

Robert C. Good, The “Congo Crisis: A Study of Post Colonial Politics,” in Larence W. Martin ed., *Neutralism and Non-alignment*, Frederiek A. Praeger, New York, 1962, p. 40.

A. Vandenbosch and W.N. Hogan, *Toward World Order*,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63, p. 169.

King Gordon, *U.N. in the Congo: A Quest for Peace*, Carnegie Endowment for Int'l Peace, 1962, p. 148.

Yearbook of the U.N., 1960, p. 108, 119.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16 June 1960—15 June 1961, GA 16th Sess., Supplement No. 1 (A/4800), 1961, p. 1.

UNR. Vol. 7, No. 2, August 1960, p. 8, 12.

ORG: 15th Sess. (Part 1) 5th Committee, op. cit., 803rd Meeting, 29 Nov. 1960, Para. 5, p. 247.

(39) SCOR: 15th Year 877th Meeting, 20/21 July 1960, Para. 9.

(40) ORGA: 15th Sess. (part I), 5th Committee, 21 Sept.—19 Dec. 1960, 777th Meeting, Agenda item 49, (A/C, 5/836), Para. 52, p. 97; Para. 14., p. 248.

YBUN, 1960, op. cit., pp. 119—121.

(41)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24. 崔鍾起, 國際行政, 前揭書, 420面.

(42) ORGA: 15th Sess. (part I), 5th Committee, 1960, op. cit., 803rd Meeting, 29 Nov. 1960, Paras, 30—31, pp. 249—250.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자노」(Quijano)氏는 「콩고」作戰에 對한 如何한 財政的인 經費負擔의 決定에도 同意할 것⁽⁴³⁾ 입을 力說하였다. 또한 「아이랜드」·「리비아」 및 瑞典은 「콩고」作戰軍의 1960 年度 經費를 國際聯合定期豫算 속에 包含하고, 負擔率은 同定期豫算에 對한 分擔率을 適用할 것을 示唆하였다.

「튜니시아」代表 「첼리」(Chelli)氏⁽⁴⁴⁾와 「파키스탄」의 「샤히」(Shahi)⁽⁴⁵⁾代表 및 「세네갈」⁽⁴⁶⁾代表 等은 「콩고」作戰軍의 財政에 對한 特別計定(ad hoc account)을 設定할 決議案을 提出하였다. 그리하여 1960年度의 「콩고」作戰軍 經費는 憲章 第17條의 精神에 立脚한 國際聯合의 經費로서 이에 對한 賦課는 法的義務를 지니는 拘束力 있는 效力を 가져야 된다는 것을 提議하였다.⁽⁴⁷⁾ 이러한 提議는 美國과 新生國家의 支持를 받았다.⁽⁴⁸⁾

蘇聯代表 「로슈친」(Roshchin)은 同 作戰軍의 活動은 國際聯合의 定期豫算是 完全히 別途의 것이라고 指摘하고, 첫째로, 「콩고」作戰費는 定期豫算에 包含시킬 수 없으며, 둘째, 同 經費條로 事務總長은 臨時로 다른 資金을 借用하여서는 안되고, 셋째로, 「콩고」作戰은 國際聯合의 財政的인 危機를 招來하며 同 經費支出을 統制 또는 自制할 수 없으므로, 一旦 中止措置를 取할것, 넷째로, 「콩고」事態에 따르는 經費는 「벨지움」·美國 및 西方陣營國家가 負擔하여야 될 것이다. 다섯째로, 卽時 「콩고」事態에 對한 活動經費의 削減 및 同 作戰의 終熄에 對한 提案을 提出하므로서 國際聯合의 財政的 危機와 不信은 冒犯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力說하였다.⁽⁴⁹⁾ 또한 同一한 要旨 內容의 反對主張을 共產各國에서는 強調하고,⁽⁵⁰⁾ 「콩고」作戰軍의 如何한 經費도 負擔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므로서 殘餘의 經費는 加

(43) ORGA: 15th Sess., *Ibid.*, 806th Meeting, 1 Dec. 1960, Para. 16, p. 262.

(44) ORGA: 15th Sess., *Ibid.*, 815th Meeting, 12 Dec. 1960, Para. 11—25, pp. 308—309. 819th Meeting, 13 Dec. 1960, Para. 42, p. 325.

(45) ORGA: 15th Sess., *Ibid.*, Para. 50, P. 325. 822nd Meeting, 16 Dec. 1960, *Ibid.*, Para. 49, p. 354. (A/C. 5/L. 645). 811th Meeting, 7 Dec. 1960, *Ibid.*, Para. 3—29, pp. 287—291.

(46) ORGA: 15th Sess., 5th Committee, *Ibid.*, 813th Meeting, 9 Dec. 1960, (A/C. 5/L. 638) Para. 52, P. 304.

GAOR: 15th Sess. Annexes, Agenda item, 49/50 (A/4676) Paras. 7, 10. GA Resolution 1583, (XV), 20 Dec. 1960.

(47) GAOR: 15th Sess., 5th Committee, 815th Meeting, 12 Dec. 1960, Paras 21—25, p. 309. 818th Meeting, 14 Dec. 1960, *Ibid.*, Paras 7, 14, p. 329—330.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25.

(48) GAOR: 15th Sess., 5th Committee, 803rd Meeting, 29 Nov. 1960, *op. cit.*, Para. 7, 247, Para. 39—48, pp. 250—252.

(49) *Ibid.*, Para. 49, p. 252.

(50) *Ibid.*, 805th Meeting, 30 Nov. 1960. Para. 17, p. 257 (Poland 代表 發言).

Ibid., 807th Meeting, 2 Dec. 1960, Para 10, p. 226 (Czechoslovakia 代表 發言).

Ibid., 808th Meeting, 5 Dec. 1960, Para. 5, p. 269 (Rumania 代表 發言).

Ibid., 809th Meeting, 5 Dec. 1960. Para. 7, p. 276 (Bulgaria 代表 發言).

Ibid., 815th Meeting, 12 Dec. 1960, Para. 53, p. 312 (Albania 代表 發言).

Ibid., 817th Meeting, 13, Dec. 1960, Para. 15, p. 323 (Indonesia 代表 發言).

Ibid., Para. 22, p. 323 (Cuba 代表 發言).

研究論文

盟國의 自發的인 寄附에 依하여야 될 것이라고 附言하였다.

「멕시코」代表 「칸투」(Cantu)氏는 國際聯合非常軍 및 「콩고」作戰軍과 같은 平和維持에 對한 責任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에 있으며, 이에 對한 經費負擔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에서 賦課하여야 될 것이라고 指摘하였다.⁽⁵¹⁾ 또한 「베네수에라」代表 「아래이즈」(Arraiz)氏는 同活動에 依하여 惠澤을 받는 當事國 또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에 依하여 그 經費는 負擔되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였다.⁽⁵²⁾ 이와 같이 南美諸國에서는 國際社會의 安全과 平和에 對한 責任은 安全保障理事會에 있으므로, 「콩고」作戰軍의 經費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에서 負擔하여야 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結局 第5委員會에서는 「파키스탄」·「세네갈」 및 「튜니시아」提案인 決議案을 賛成 45, 否 15, 棄權 25로 承認하였다.⁽⁵³⁾ 그리하여 4,850 萬弗을 「콩고」作戰軍 經費로 特別計定에 依하여 1960年度 定期豫算規模에 對한 賦課率로써 策定할 것을 建議하였다.

同 賦課額은 憲章 第17條의 精神밑에서 加盟國에게 “法의義務를 지는 拘束力”이 있어야 할 것임을 強調하였다. 또한 「벨지움」政府에 對하여 實質的인 寄附를 할 것을 要請하고, 自發的인 經費負擔에 關하여 支拂能力이 없는 國家에 對하여는 그 分擔額을 50% 以上을 刪減할 것을 建議하였다.⁽⁵⁴⁾

同建議案은 1960年 12月 20日 總會 全體會議에서 賛成 46, 反對 17, 棄權 24票로 採擇되었으며, 臨時措置로서 1961年の 1·4分期에 「콩고」作戰軍 經費 2,400 萬弗을 事務總長이 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였다.⁽⁵⁵⁾

事務總長은 1961年 3月 1日까지 1961年度의 臨時의豫算案을 準備하였다. 國際聯合 「콩고」作戰軍 經費는 軍隊 및 民間人·備品維持費·補給費·用役費·備品購入費·厚生施設 및 臨時支出費用 等으로 都合 1億 3,500 萬弗을 推計하였다.

1961年 3月 21日 總會의 行政 및 豫算問題諮詢委員會에서는 1961年度의 「콩고」作戰軍 經費는 1億 2,000 萬弗을 超過치 않을 것을 強調하고, 그中 1億弗은 國際聯合에 依한 活動

(51) *Ibid.*, 821st Meeting, 16 Dec. 1960, Para. 40, p. 349.

(52) *Ibid.*, 808th Meeting, 5 Dec. 1960, Para. 24, p. 335.

Ibid., 819th Meeting, 15 Dec. 1960, Para. 24, p. 335.

(53) *Ibid.*, 819th Meeting, 15 Dec. 1960, Para. 33, p. 337.

YBUN, 1960, *op. cit.*, p. 121.

崔鍾起, 國際行政, 前揭書, 420面.

(54)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26.

(55) *YBUN*, 1960, *op. cit.*, p. 121.

GA Resolution 1590 (XV), 20 Dec. 1960.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Fifteenth Sess., Vol. I, Supplement No. 16 (A/4684), *op. cit.*, p. 57.

Gordon, *U.N. in the Congo*, *op. cit.*, p. 151.

費로 充當하고, 2,000 萬弗은 「콩고」作戰軍의 臨時經費로 各國政府에 依하여 既히 臨時支出된 費用에 對한 債還金으로 策定할 것을 暗示하였다.

總會 第5委員會는 1961年度의 「콩고」作戰軍經費에 對한 檢討를 爲하여, 1961年 3月 14日부터 4月 20日까지 21次의 會議를 거듭하여 論議하였다. 즉 同經費에 對하여 「콩고」作戰軍의 活動이 平和維持와 安全을 爲한 事項이므로 憲章의 精神 밑에서 絶對的으로 安全保障理事會의 管掌事項이라고 指摘하고, 憲章 第11條・43條 및 48條의 規程에 따라 蘇聯代表의 要請으로, 그와 같은 聲明은 同 委員會의 公式議事錄(document of the Committee)으로서 回翰되었다. 이와 같은 主張을 하는 代表들은 總會에 依하여 決定되는 國際聯合「콩고」作戰費의 分擔에 對한 拘束力を 받지 않는다는 點을 聲明하였다.⁽⁵⁶⁾

또한 다른 代表들은 「콩고」作戰軍의 活動은 安全保障理事會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서, 總會는 現在 國際聯合의 「콩고」作戰의 全般的인 問題에 對한 適當한 方法을 模索하고 있는 것이다. 總會는 如何한 境遇에도 加盟國이 經費分擔에 對한 資金을 充當시키는 權限을 保有하는 唯一한 機關이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數個國 代表들은 同 經費가 內包하고 있는 經費內譯을 審議 또는 分析의 困難性으로 1961年度 同豫算案의 承認과, 어떤 特殊한 將次의 經費・期間・性格 및 活動規模 等에 對한 事前判斷은 考慮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그리하여 第5委員會는 同活動 經費의 財政의in 方法에 對한 注意를 傾注하였다.⁽⁵⁷⁾

1961年 3月 30日 第5委員會는 總會決議 1950(XV)에 依해 承認된 1961年 3月末까지의 「콩고」作戰軍經費에 따르는 問題를 審議하였다. 그리하여 印度提案에 對한 「베네주엘라」의 口頭修正案을 添加한 決議案이 賛成 38, 反對 9, 棄權 29로서 採擇되었다. 同決議案은 1961年 4月 3日 總會 全體會議에서 決議 1595(XV)로서 賛成 51, 反對 10, 棄權 22로 採擇되었다. 總會에서는 1961年度 「콩고」作戰軍經費에 對한豫算案 問題와 總會에서 論議中인 同 作戰費에 對하여 事務總長으로 하여금 1961年 4月 21日까지 「콩고」作戰의 繼續費로서 每月 800萬弗을 超過하지 않는 限度內에서 使用을 許容할 것을 認定하였다. 第5委員會에서는 同 4月 3日부터 20日까지의 會議에서 여러가지 決議案을 審議한 끝에, 4月 20日 2個의 決議案을 承認하였다.⁽⁵⁸⁾

그 첫째 決議案은, 「파키스탄」과 「튜니시아」原提案에 「파키스탄」・「튜니시아」・「가나」 및 「라이베리아」의 修正案의 形式으로서 提案되었다. 同修正案에 對한 修正은 「알젤틴」・「보리비아」・「치리」・「콜롬비아」・「코스타리카」・「에쿠아돌」・「엘・살바돌」・「흔류라스」・「멕시

(56) YBUN, 1960, *Ibid.*, p. 122.

(57) YBUN, 1960, *Ibid.*, pp. 122—123.

(58) YBUN, 1960, *Ibid.*, p. 123.

研究論文

코」·「파나마」·「파라가아」·「페루」·「우루과이」 및 「베네주엘라」가 共同提議하고, 印度는 別途로 修正案을 提出하였다. 同 決議案의 各種 修正案을 綜合한 決議案이 同 委員會에 依하여 賛成 43, 反對 26, 廢權 14로서 承認되었다. 同 決議案은 1961年 4月 21日 總會 全體會議에서 若干의 修正이 加하여진 後, 賛成 54, 反對 15, 廢權 23票로서 決議 1619(XV)가 通過되었다.⁽⁵⁹⁾

同 決議에 依하여 國際聯合 「콩고」作戰費는 國際聯合 定期豫算과는 그 性格이 根本的으로 다르며, 定期豫算에 適用되는 節次와는 다르다는 것은 이 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議決되었다. 즉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은 國際平和와 安全維持에 對한 特別한 責任을 갖는 것으로 平和와 安全을 為한 活動費에 對한 財政面의 財政의인 寄附에 關해 特別責任을 갖는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한다.

몇 加盟國家는 附隨의인 自發的 寄附를 提供하겠다고 宣言한 加盟國에 對하여 感謝함을 表하면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i) 1961年度 「콩고」作戰費에 對한 特別計定을 둘 것을 決定하며 (ii) 行政 및 豫算問題諮問委員會의 建議를 承認하고, (iii) 「콩고」作戰費條로서, 1961年 1月 1日부터 同年 10月 31일까지 1億弗의 豫算을 策定할 것을 決定한다. (iv) 定期豫算額에 對한 負擔 規模로서 加盟國에 賦課하는 1億弗의 經費分擔率은 (viii)項의 規程을 參照하여 決定할 것이다. 이 作戰費의 結果로서 機構의 特別經費를 支出하기 為한 다른 規模의 賦課率을 設置하여야 한다.

(v)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은 이에 所要되는 追加의인 經費에 對한 寄附를 할 것을 促求한다.

(vi) 自發의인 寄附를 하기 為하여 모든 他 加盟國에 對하여 助力할 것을 呼訴한다.

(vii) 「벨지움」政府에 對하여는 「콩고」(Leopoldville, Congo)共和國政府의 地位에 關聯있는 國家는 附隨의인 寄附를 提供할 것을 要請한다.

(viii) 賦課率은 다음 原則에 依하여 削減할 것을 決定한다.

(a) 定期豫算額에 對한 寄附金賦課率이 0.04%에서 0.25%까지를 負擔하고 있는 加盟國의 賦課率은 그 80%까지 削減한다.

(b) 1960年度 擴大技術援助計劃下의 受援國으로서 定期豫算에 對한 0.26%부터 1.25%를 負擔하고 있는 加盟國에 對하여는 80%까지 削減한다.

(c) 1960年度 擴大技術援助計劃의 受援國으로서 定期豫算의 負擔率이 1.26% 및 그 以上的 加盟國家에 對하여는 寄附金의 分擔額을 50%까지 削減한다.

(ix) 前項의 (v) · (vi) · 및 (vii)項下의 加盟國에 對하여는 (viii)項 適用에 따르는 不足

(59) ORGA: 15th Sess. Annexes, Vol. II, op. cit., Agenda item, 49/50, pp. 47—49.
UNR, Vol. 8, No. 5, May 1961, p. 7.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額에 對하여는 追加的인 寄附를 適用할 것을 決定한다는 内容의 決議가 成立된 것이다.

둘째 번의 決議案은 機構의 行政 및 豫算節次의 審議에 對한 것으로, 「카나다」提案에 「커럼비아」·「멕시코」·「페루」 및 「베네수엘라」의 共同提案이 第5委員會에 提議되었다. 同 共同提案은 修正되어 同委에서 賛成 26, 反對 24, 廉權 29票로서 承認되었다. 그 後 1961年 4月 21日 總會 全體會議에서는 第5委員會決議案 前文 2項이 刪除된 後, 賛成 44, 反對 13, 廉權 32票로서 決議 1620(XV)이 採擇되었다.⁽⁶⁰⁾

同決議에 依하여, (i) 16次總會의 臨時議題로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包含한 國際聯合의 行政 및 豫算節次의 問題로서 緊急하고 重要한 事項을 包含할 것을 決定한다.

(a) 平和維持作戰經費를 包含하는 方法.

(b) 그와 같은 方法과 既存한 機構의 行政 및 豫算節次와의 關係.

(ii) 總會議長에게 15個加盟國代表로 構成되는 實務團(Working Group)을 任命할 것을 要請한다. 同 實務團에는 安全保障理事會常任理事國과 「아프리카」에서 2名, 亞細亞에서 2名, 南美서 2名, 東歐에서 1名, 西歐서 2名, 英聯邦領에서 각각 1名으로 構成하여 (i)項에 規定한 事項을 審議하는 同時에, 豫算에 對하여 行政 및 豫算諮詢委員會・寄附金委員會와 協調할 것과 그 結果를 16次 總會에 報告할 것을 要請하였다.

(iii) 行政 및 豫算諮詢委員會에게 同 實務團과의 協調와 機構의 財政的인 安定을 確保하며 國際聯合의 行政 및 豫算節次의 改善을 위한 試圖에 助力할 것을 要請한다.

(iv) 加盟國에게 1961年 7月 1日 以內로 實務團에 依하여 審議하는 平和와 安全에 對한 特別賦課規模을 決定하기 為한 適用 原則을 提出할 것 등을 要請하였다.

(v) 이 項目下의 審議되는 모든 關係文書를 第16次 總會에 委託할 것을 決定한다.

이 決定에 依한 要請으로서 總會議長은 實務團으로서 「부라질」·「불가리아」·「카나다」中國・佛蘭西・印度・伊太利・日本・「멕시코」・「나이제리아」・瑞典・蘇聯・埃及共和國・英國 및 美國 等 15個國 代表로 構成하였다.⁽⁶¹⁾

1961年 10月 30日 總會에서는 國際聯合 「콩고」(Leopoldville, Congo)作戰軍 經費로서 每月 1,000萬弗 限度로 1961年 12月 31日까지 그 活動을 繼續하여 事務局에게 資金支出의 委任을 承認하는 決議案(1633[XVI])을 賛成 69, 反對 10, 廉權 18票로서 採擇하였다.

이와 같은 決議를 하게 된 것은, 1961年 4月 21日 總會서 採擇된 決議 1619(XV)는 1961年 1月 1日부터 1961年 10月 31日까지의 期間에 이르는 豫算措置안을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60) YBUN, 1960, *op. cit.*, p. 124, 128—129.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15th Sess. Annexes, Vol. II, *Ibid.*, Agenda item 49/50, p.19.

(61) YBUN, 1961, *Ibid.*, p. 124.

研究論文

1961年 10月 30日의 總會決定은 第5委員會에서 「카나다」·「세이론」·「에치오피아」·馬來聯邦·「가나」·「아이랜드」·「라이베리아」·「나이제리아」·「파키스탄」·瑞典 및 「튜니시아」提案을 賛成 55, 反對 9, 壟權 15票로서 承認한 原案에 依據하여 取하여졌던 것이다.

事務總長의 報告에서 指摘된 것은, (a) 「콩고」作戰軍 經費가 1961年 1月부터 10月까지 10個月間 1億弗로 推計되었으며, (b) 現情勢下에서는 每月 同經費가 約 1,000萬弗이 所要될 것이라는 것이 豫測되었다.

그後 1961年 12月 15日 第5委員會는 同決議案을 賛成 57, 反對 11, 壟權 12票로서 採擇하고,⁽⁶³⁾ 그 後 5日이 經過한 다음 總會 全體會議에서 賛成 67, 反對 13, 壟權 15票로 決議 1732(XVI)로서 承認되었다.⁽⁶⁴⁾

이 決議로서 總會는 1961年 11月 1日부터 1962年 6月 30日까지 「콩고」作戰軍經費로서 8,000萬弗의 豫算을 策定할 것을 決定하였다. 그리고 이 經費에 對한 特別計定을 繼續할 것과 事務總長으로 하여금 每月 1,000萬弗을 超過하지 않는 限度內에서 使用할 것을 許容한 것이다.

즉 國際聯合 全加盟國에 對하여 1962年度 定期豫算規模에 對한 賦課率을 同 8,000萬弗 經費에 適用할 것이나, 「콩고」作戰軍 經費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른 規模의 削減賦課率을 設定할 것을 規定하였다.

(a) 定期豫算에 對한 寄附金賦課率 0.04%부터 0.25%를 納付하는 加盟國은 賦課額의 80%까지 削減하며, (b) 加盟國中 1961年度의 擴大技術援助計劃下에 受援國家로서 定期豫算 0.26%에서 1.25%까지를 納付하는 國家에 對하여는 賦課額中 80%를 削減할 것.

(c) 1961年度의 擴大技術援助計劃下의 受援國家로서 定期豫算額의 1.26% 以上을 負擔하는 國家의 境遇에는, 그 賦課額의 50%를 削減할 것 等을 規定하였다.

또한 總會에서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에 對하여 追加的인 寄附를 提供할 것을 促

(62) YBUN, 1961, *op. cit.*, p. 86.

ORGА: 16th Sess. Annexes, Vol. II, 19 Sept. 1961—23 Feb. 1962 and 7—28, June 1962, 1963, Agenda item 55, p. 11.

(63) ORGA: 16th Sess. Fifth Committee, 20 Sept. 1961—22 Feb. 1962, 905th meeting, 15 Dec. 1961, Agenda item, 55. Para. 49. p. 333.

ORGА: 16th Sess. Annexes, Vol. II, *op. cit.*, Agenda item 55, Para. 11, p. 11.

反對國: Albania, Belgium, Bulgaria,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Czechoslovakia, Hungary, Mongolia, Poland, Rumania,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U.S.S.R.

棄權國: Afghanistan, Cambodia, China, France, Iraq, Philippines, Portugal, South Africa, Sudan, U.A.R., Upper Volta, Yemen.

(64) ORGA: 16th Sess. Annexes. Vol. II, *Ibid.*, p. 12.

YBUN, 1961, *op. cit.*, p. 87.

UNR, Vol. 9, No. 1, Jan. 1962, *op. cit.*, pp. 64—65.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求하는 同時に、全加盟國家에게 「콩고」作戰費에 對한 支拂을 도울수 있도록 自發的 寄附金의 納付를 呼訴하였다. 「벨지움」國家에 對하여는 「콩고」事態에 直接 關聯을 갖고 있는 國家로서 附隨的인 寄附金을 提供하도록 要請하였다.⁽⁶⁵⁾

한편 1962 年度豫算案을 審議하는 第 16 次 總會에서는 「콩고」事態收拾經費에 對한 論難이 展開되었다.

蘇聯代表에 依해 開陳된 見解는 「헝가리」·「포랜드」 및 「루마니아」諸國의 支持를 받았다.

그러나 이하한 「콩고」活動費와 國際聯合非常軍에 對한 經費負擔은 國際聯合에 있어서 큰 難關에 逢着하였다. 1962 年 7 月까지 國際聯合非常軍의 賦課額中 未徵收額이 3,100 萬弗에 이르렀으며, 每月 1,000 萬弗이 所要되는 「콩고」作戰費는 賦課額中 未收額이 1 億 1,000 萬弗에 達하고 있다.⁽⁶⁶⁾

事務總長署理「우·탄트」氏는 “國際聯合은 破產狀態에 直面하고 있는데, 그것은 加盟國中 平和維持를 為한 繼續活動費의 滯納 等에 起因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總會에서 이 問題解決에 適切한 措置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要望하였다.⁽⁶⁷⁾

그리하여 總會는 두가지 行動을 決定하였다. 그 하나는 總會가 國際聯合非常軍과 「콩고」作戰軍經費에 對한 賦課權을 갖고 있는 與否에 關한 法的 解決을 為한 國際司法裁判所의 勸告的 意見을 要請하였다. 그것은 「벨지움」·佛蘭西·南阿共和國·東歐諸國과 南美의 여 러나라 및 埃及 諸國 등 諸國家의 滯納때문인 것이다.⁽⁶⁸⁾

둘째는, 財政危機에 對한 救濟措置를 講究하기 為한 것이다.⁽⁶⁹⁾ 즉, 「덴마크」·「에치오피아」·馬來聯邦·和蘭·「놀웨이」·「파키스탄」·「튜니시아」·「유고스라비아」諸國과 「카나다」의 提案으로 年 金利 2%로 2 億弗의 國際聯合 公債發行을 許容하는 決議案을 提案하였다. 즉, 이 金額에 對한 元金과 利子를 25 年間 年賦償還으로 定期豫算額에 每年的 債還額을 策定하는 것이다. 同 提案은 1961 年 12 月 20 日 總會 全體會議에서 賛成 59, 反對 13,棄權 24 로서 承認되었다.⁽⁷⁰⁾

(65) YBUN, 1961, *Ibid.*, pp. 87, 565—566.

ORGANIZ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 16th Sess. Annexes, Vol. II, *Ibid.*, Para. 5, p. 12.

(66) "Issue before the Seven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39, Sept. 1962, p. 185.

(67) GAOR: 16th Sess. Annexes. Vol. II, *op. cit.*, Agenda item 54 (A/C. 5/907) paras. 14—5, p.41.

(68) "Issue before the Seven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39, Sept. 1962, *Ibid.*, p. 185.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Seventeenth Sess., Supplement No. 17 (A/5217), 1963, 185 (XVII), pp. 54—55.

(69) GAOR: 16th Sess., 5th Committee, *op. cit.*, 907th Meeting, 18 Dec. 1961, Para. 7, p. 341. Mr. Bannier, Delegate of Netherlands.

(70) GA Resolution, 1739 (XVI), 20 Dec. 1961.

UNR, Vol. 9, No. 9, Sept. 1962, *op. cit.*, pp. 34—36.

研究論文

國際司法裁判所에서는 1961年 7月 20日字로 勸告的 意見을 發表하고,⁽⁷¹⁾ 國際聯合非常軍 및 「콩고」作戰軍의 經費는 憲章 第17條 2項의 “機構의 經費”로서 加盟國에서 賦課되어야 한다는 것을 指摘한 것이다. 1962年 11月까지 56個國政府(그中 4個國은 非加盟國政府 包含)에서는 117,980,826 弗 該當의 國際聯合公債를 購入할 뜻을 밝히었다.⁽⁷²⁾

1962年 12月 19日 總會에서는 國際司法裁判所의 勸告的 意見을 贊成 76, 反對 17, 異權 7票로 受諾하였다.⁽⁷³⁾

總會에서는 國際聯合의 行政 및 豐算節次를 審議하기 為한 21名의 實務團을 設置할 것을 決定하였다. 同 實務團은 可能한 限 特別賦課率을 包含한 中·近東 및 「콩고」에 對한 平和維持活動費가 過重한 國際聯合의 經費支出이 되므로, 平和維持活動費에 對한 特別한 徵收方法과 分擔金 滯納에 對해 解決策을 研究하기 為한 目的下에 構成된 것이다.⁽⁷⁴⁾ 그리하여 總會는 實務團의 報告를 審議하기 為하여 1963年 春에 特別總會를 召集할 것을 決定하고, 國際聯合非常軍 經費에 對하여는 特別計定의 策定을 繼續하기로 決定하는 同時に 事務總長에게 每月 1,580,000 弗 範圍內로 同 非常軍經費使用을 1963年 6月 30日까지 延長 支出할 수 있는 權限을 許容하였다.⁽⁷⁵⁾ 그리고 「콩고」作戰軍經費도 特別計定으로 繼續할 것을 決定하고, 事務總長에게 同 「콩고」作戰軍經費로 平均 每月 1,000 萬弗 以內의 經費를 1963年 6月 30日까지 支出할 수 있는 權限을 賦與하였다.⁽⁷⁶⁾

YB UN, 1961, *op. cit.*, p. 568.

反對國 : Albania, Belgium, Bulgaria, Byelorussian S.S.R., Cuba, Czechoslovakia, France, Hungary, Mongolia, Poland, Rumania, Ukrainian S.S.R., U.S.S.R.

(71) "Issue before the Seventeenth G.A.", *Int'l Conciliation*, No. 539, Sept. 1962, *op. cit.*, p. 164. *UNR*, Vol. 9, No. 8, August 1962, p. 1, 11—12.

Int'l Court of Justice, Yearbook, 1961—1962, pp. 78—84.

Leo Gross, "Expenses of the U.N. for Peace-Keeping Operations," *Int'l Org.*, Vol. XVII, No. 1, Winter 1963, pp. 1—35.

The New York Times, 21 July 1962.

Vandenbosch and Hogan, *Toward World Order*, *op. cit.*, p. 310.

Gordon, *U.N. in the Congo: A Quest for Peace*, *op. cit.*, p. 153.

Gross, *The United Nations: Structure for Peace*, *op. cit.*, p. 101.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51.

(72) Goldon, *U.N. in the Congo*, *Ibid.*, p. 153.

(73)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53.

UNR, Vol. 10, No. 1, Jan. 1963, *op. cit.*, pp. 46—51.

Resolutions adopted by the G.A. during its 17th Sess., *op. cit.*, pp. 54—55.

(7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854 B (XVII), 19 Dec. 1962, *Ibid.*, p. 55.

總會議長은 21名의 實務團을 構成하기 為하여 Argentina, Australia, Cameroon, Mongolia, Netherlands and Pakistan 等 6個國代表를 既15名 實務團에 追加하였다.

(75) "Issue before the Eigh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44, Sept. 1963, *op. cit.*, p. 188.

(76) *United Nations, Doc. A/C, 5/SR 1003*, 26 June 1963, p. 6.

그런데 不幸하게도 實務團의 活動은 「디램마」에 빠졌다. 1962年을 通하여 美國만이 單只 國際聯合에 對한 賦課額中 1億 4,760萬弗을 寄附하였을 뿐이며, 그것은 全體額의 45%를 차지하는 것이다.⁽⁷⁷⁾ 그리고 萬一 集團責任의 原則이 維持되었다면, 滯納國에 對한 制裁措置로서 憲章 第19條의 適用일 것이다. 즉 滿 2年間의 加盟國의 延滯金額이 그때까지 滿 2年間에 그나라가 支拂하여야 할 分擔金額과 같거나, 그 以上이 되는 때에는 當該 國家는 總會에서 投票權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條項의 適用問題는 蘇聯 및 其他 蘇聯團諸國과 佛蘭西 等이 總會에서 投票權의 박탈에 同意하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다. 「항가리」代表는 “그와 같은 試圖는 失敗에 끝날 運命에 있으며, 憲章 第19條의 適用이라는 것은 國際聯合을 破壞로 이끌게 될 것”⁽⁷⁸⁾이라고 指摘하였다.

事務總長의 報告에 依하면 1963年 5月 現在 寄附金의 總額은 1963年 賦課額의 未納額과 運營資金을 미리 使用한 것을 包含하여, 1億 8,300萬弗에 이르며 그中 蘇聯과 佛蘭西의 滯納額이 約 6,000萬弗에 達하고 있다.⁽⁷⁹⁾ 2億弗의 國際聯合公債 發行은 1億 5,000萬弗分이 賣却되었다.⁽⁸⁰⁾ 國際聯合의 財政狀態가 改善되지 않는限, 1963年 12月까지 國際聯合의 現金資源은 1個月間의 活動費도 未達이 될 것이다.

1963年 6月 27日 國際聯合에서는 第4次 特別總會를 開催하여 國際聯合 定期豫算과 別途로 國際聯合非常軍 및 國際聯合「콩고」作戰費에 對한 特別計定을 設定하고 「콩고」作戰費에 3,300萬弗, 同 非常軍費에 950萬弗을 1963年 7月 1日부터 向後 6個月間 充當시키기로 決定하였다.⁽⁸¹⁾

이와 같은 措置는 1963年的 前期 6個月間에 對한 不足額에 對備하기 為한 것으로서, 1963年 5月 31日까지는 同經費가 1億 900萬弗이 不足하게 되며, 1963年 6月 30日까지는 1億 1,170萬弗이 不足하게 된다.⁽⁸²⁾

同 國際聯合 第4次 特別總會에서는 이 外에도 各 加盟國政府에 對해, 1963年 12月 31日 까지 賦課額을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7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1864 (XVII), UNEF, 20 Dec. 1962.

Resolutions adopted by the G.A. during its Seventeenth Sess., Supplement No. 17 (A/5217), *op. cit.*, p. 61.

(78)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1865 (XVII), U.N. operations in the Congo, 20 Dec. 1962, *Ibid.*, p. 61.

(79) "Issue before Eighteenth G.A.," *Int'l Conciliation*, No. 544, Sept. 1963, *op. cit.*, p. 188.

(80) *UNR*, Vol. 10, No. 7, July 1963, p. 3.

1963年 6月 25日 美國은 國際聯合公債에 對한 第4次 支拂로 6,854萬弗 該當을 購入하였다. 美國은 總計 72,069,922弗의 公債을 購入한 것이다. 1962年 12月 21日에 15,569,840弗과 1963年 3月 27日에 5,543,000弗을 購入하였다. 同 公債는 97個國에서 總 144,139,844弗을 購入하였다.

(81)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Fifth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Eighteenth Sess.*, Supplement No. 7 (A/5507), 1963, Para. 6, p. 2. Para. 29, p. 4.

UNR, Vol. 10, No. 7, July 1963, *op. cit.*, p. 62.

(82)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Ibid.*, Para. 25, p. 4.

研究論文

(a) 300 萬弗에 對하여는 全加盟國의 1963 年度 定期豫算額의 賦課率을 適用할 것.
(b) 1963 年度의 定期豫算額을 適用함에 있어 「콩고」作戰費 3,300 萬弗中의 13,000 萬弗에 對해서, 經濟的으로 低開發國家에게는 1963 年度의 同定期豫算額賦課率의 45%를 負擔할 것 이며, 同 暫定的인 賦課率의 調整은 現國際平和作戰費에 對한 特別調整이지, 將次의 同作戰費 및 其他 活動費에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決定은 賛成 80, 反對 12, 嘉權 15 票로 採擇된 것이다.⁽⁸³⁾

또한 國際聯合非常軍 및 「콩고」作戰費에 對한 特別計定의 寄附金賦課에 對한 滯納問題에 關하여는 加盟國이 早速한 時日內에 이 計定에 對하여 支拂하여야 된다고 決議하였다. 즉, 各加盟國에 對해 同 特別計定의 滯納額을 早速히 納付하므로서,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를 解消시킬 수 있도록 呼訴하는 同時에, 事務總長으로 하여금 各加盟國家에 對하여 同滯納額을 年賦制에 依한 支拂 問題를 協議 하도록 提議하고, 이에 關한 協議・調整結果에 對한 適切한 報告를 總會에 提出할 것을 要請하였다. 同 決議는 賛成 79, 反對 12, 嘉權 17 票로서 採擇되었다.⁽⁸⁴⁾

또한 國際聯合의 行政 및 豫算問題節次審議 實務團의 活動을 繼續시키는 同時에 同 實務團에 對해 다음과 같이 要請하였다.

- (a) 將次의 平和維持作戰費의 經費負擔에 對하여 特別한 方法을 建議할 수 있도록 講究 할 것.
- (b) 將次의 平和維持作戰費의 다른 財源에 對한 暗示를 考慮할 것.
- (c) 將次의 平和維持作戰費의 財源問題에 關하여 可能한限, 全加盟國과의 合意措置에 이를 수 있는 方途를 模索할 것.

그리고 同 實務團은 寄附金委員會와의 協議를 促求하는 한편, 事務總長으로 하여금 同 實務團의 活動에 따르는 諸般 援助와 協調 및 便宜를 提供 할 것을 要請하고, 同 實務團으로 하여금 以上的 事項에 關한 結果報告를 第 19 次 總會까지 報告할 것을 賛成 95, 反對 12, 嘉權 2 票로서 採擇하였다.⁽⁸⁵⁾

한편 國際聯合發行公債는 1963 年 12 月 31 日까지 販賣할 것(賛成 93, 反對 12, 嘉權 12)과 平和基金(Peace Fund)을 設置할 것을 賛成 91, 反對 12, 嘉權 2 票로서 決定하고, 事務總長에게 이에 對한 各加盟國政府와의 協議에 따르는 結果를 第 18 次 總會에 報告할 것을 決議하였다.⁽⁸⁶⁾

이와 같이 國際聯合의 定期豫算이 아닌 平和維持를 為한 活動費에 對한 經費 酿出問題는 國際聯合에 있어서 큰 問題이며, 이것은 財務行政이라기 보다는 東・西兩大陣營間의 對立

(83) *UNR*, Vol. 10, No. 7, July 1963, *op. cit.*, pp. 62-63.

(84) *UNR*, Vol. 10, No. 7, July 1963, *Ibid.*, p. 63.

(85) *Ibid.*, p. 63.

(86) *Ibid.*, p. 63.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된 政治的인 問題이며, 이에 對한 政治的인 問題解決 없이는 이러한 難關의 解消를 事實上 期待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活動에 【對한 分擔額의 徵收・納付가 얼마나 困難하며, 그것이 오늘날의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를 招來케 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蘇聯團에서는 이에 對한 經費의 單一弗도 納付치 않고 있으며,⁽⁸⁷⁾ 그것은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를 激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同 非常軍 및 「콩고」作戰費의 納付問題는 加盟國政府가 國際聯合의 機構의 經費라는 國際司法裁判所의 勸告的인 意見이 提示된 바 있었으나, 아직 同 經費據出問題는 圓滑한 解決을 보지 못한채 큰 難題로서, 國際聯合의 存廢의 危機에 까지 發展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III. 問題點과 結語

中・近東의 國際聯合非常軍과 「콩고」의 作戰軍의 活動은 國際的인 協調를 為한 國際聯合의 決定的인 試鍊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으며,⁽¹⁾ 이로 因한 財政的인 危機는 國際聯合의 存亡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1962年末까지 加盟國의 4分의 1은 1957年부터 1962年까지 그들에게 賦課된 同 分擔金을 滯納하고 있는 것이다. 同 期間中 2分의 1以上의 加盟國은 定期豫算額을 모두 支拂하였다. 즉, 國際聯合非常軍 活動費에 對한 賦課金에 關하여는 加盟國中 다만 41個國이 負擔하였으며, 「콩고」作戰軍에 對한 經費는 32個國이 支拂하였을 뿐이다. 國際聯合加盟國中 25個國은 그들에게 賦課된 全額을 完納하였는데, 그 內譯을 보면 西歐羅巴의 7個國과 亞細亞 7個國, 「아프리카」 7個國 및 美國을 包含한 其他 4個國인 것이다.⁽²⁾ 1962年 12月末 現在 國際聯合의 定期豫算 및 同 非常軍經費와 「콩고」作戰費의 滯納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³⁾

地域 區分	1957年		1958年		1959年	
	定期豫算	UNEF	定期豫算	UNEF	定期豫算	UNEF
아프리카 a	0	1	0	1	0	1
아랍 b	0	7	0	8	0	8
亞細亞 c	0	2	0	2	0	2
南美	0	7	0	7	2	10
蘇聯團	0	9	0	9	0	9
西歐	0	2	0	2	0	2
其他 d	0	1	0	1	0	1
計	0	29	0	30	2	33

(87) Stoessinger,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Int'l Conciliation*, No. 535, Nov. 1961, *op. cit.* p. 22.

(1) West,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ngo Financial Crisis: Lessons of the First Year," *Int'l Org.*, Vol. XV, No. 4, Autumn 1961, *op. cit.*, p. 603.

(2)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47.

研究論文

地域 區分	1960年			1961年			1962年		
	定期豫算	UNEF	UNOC	定期豫算	UNEF	UNOC	定期豫算	※ UNEF	※ UNOC
아프리카	0	1	6	3	7	10	8	12	14
아랍	0	9	6	2	9	7	4	9	7
亞細亞	0	2	5	1	4	5	6	6	6
南美	4	13	18	8	16	18	15	18	20
蘇聯	0	9	10	1	9	10	9	9	10
西歐	0	2	6	1	3	6	3	3	8
其他	0	1	2	1	1	2	2	1	2
計	4	37	53	17	49	58	47	58	67

※〔備考〕

定期豫算中：

- a. 「아랍」聯盟加盟國 및 南阿는 除外
- b. 「아랍」聯盟加盟國
- c. 自由中國除外
- d. 自由中國・「이스라엘」・南阿

1962年末 現在 美國은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으로서 國際聯合에 對한 모든 經費를 完納한 오직 1個國이었다. 英國은 國際聯合에서 「콩고」經費에 對한 負擔問題가 論難中에 있으므로, 同 經費의 納付를 除外하고는 各種 經費를 完納하였다. 自由中國은 同 經費에 對하여 滯納中이 었었으나 1963年 4月 納付하였으며, 蘇聯은 定期豫算額은 1963年 1月 納付하였으나, 6,000 萬弗에 達하는 平和維持費에 關하여는 그 負擔을 承認 않고 있다. 또한 佛蘭西도 「콩고」作戰費에 對하여 1,400 萬弗의 賦課額의 納付를 保留하고 있다.⁽⁴⁾ 定期豫算을 完納한 國家는 全加盟國中 52個國, UNEF에 對하여는 41個國, 그리고 UNOC에 對하여는 32個國만이 完納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國際聯合의 財政의 經費負擔에 對한 加盟國의 非協調의 滯納問題로 因하여, 國際聯合 第16次 總會에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法的 負擔義務與否에 對하여 意見을 照會하였던바, 1962年 7月 20日 同 裁判所에서는 勸告的 意見으로 平和維持를 為한 中・近東非常軍 및 「콩고」作戰軍經費가 國際聯合憲章 第17條 2項內의 “機構의 經費”라는 點을 贊

(3) *United Nations Secretariat, Statement on the Collection of Contributions as at 31 Dec. 1962, ST/ADM/SER. B/168, Jan. 2, 1963, Table IX.*

(4)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49.

1962年 12月 現在 加盟國中, 國際聯合定期豫算・UNEF・UNOC를 完納한 國家는, Australia, Burma, Cameroon, Canada, Cent. Afr. Rep., Ceylon, Cyprus, Denmark, Fed. Malaya, Finland, Gabon, Iceland, Indonesia, Ireland, Ivory Coast, Japan, Liberia,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Sweden, Tunisia, Turkey, U.S. 等 諸國이다.

成 9, 反對 5로서 確認하였다.⁽⁵⁾ 즉, 機構의 經費는 總會에 依하여 割當됨에 따라 加盟國이 負擔한다는 憲章의 뜻을 確認하는 勸告的인 意見이었다. 그 것은 美國에 依하여 推進된 提議를 反映한 것으로서 總會만이 機構의 經費를 割當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며, 이 割當은 定規豫算에 對한 分擔率이거나 혹은 特別한 目的下에 採擇된 特別한 規模의 分擔率로 賦課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加盟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그와 같은 主要經費에 對한 負擔을 하여야 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다.⁽⁶⁾ 同 國際司法裁判所의 見解는 勸告의이며 拘束力を 갖는 것이 아니므로, 總會에 對한 同裁判所의 權威를 크게 弱化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總會는 政治的인 機關이기 때문이다.

憲章의 第 19 條인 分擔金의 支拂遲滯에 對한 制裁條項의 適用은 他加盟國에 對한 心理的인 制裁를 加할 것이며, 他加盟國을 怒하게 할 것이다. 그와 같은 措置는 機構의 財政的인 危機에 對한 繼續 狀態의 解決에 有利한 雾靄氣를 助成하지는 못할 것이다.

同 裁判所의 見解는 새로운一面을 闡明하므로서 機構의 活動強化를 為한 法的인 原則을 發展시키는 것이며, 重要한 것은 所謂 “機構의 有效性”을 持續시키는 것이다.⁽⁷⁾ 裁判所는 機構의 權限이 加盟國에 對한 財政的인 義務를 課하는 것이라고 看做하였다. 또한 總會와 安全 保障理事會의 決議에 關係되는 部分으로서, 加盟國에 對한 法的 拘束力 있는 義務를 課하는 것이라고 同 裁判所에 依하여 解釋되지는 않았다. 結局 「콩고」事態에 關하여는 安全 保障理事會와 事務總長 雙方에 對하여 拘束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다.⁽⁸⁾

同 裁判所는 總會가 自發的으로 寄附된 資金을 利用할 수 있거나, 혹은 總會가 다른 方法 및 必要한 資金을 準備하는 配合된 方法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總會權限에 對하여 狹意解釋을 取하는 것을 拒否하고, 大多數는 “安全保障理事會가 獨占的으로 強制的 行動을 命令할 수 있으며, 機能과 權限은 憲章에 依하여 參照되고 있으나 總會는 討議・審議・

(5) Oliver J. Lissitzyn, "Int'l law in a divided World," *Int'l Conciliation*, No. 542, March 1963, p. 56. *UNR*, Vol. 9, No. 8, August 1962, *op. cit.*, pp. 11-13, 1.

Int'l Court of Justice, Yearbook, 1961-1962, *op. cit.*, pp. 78-84.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Ibid.*, p. 551.

"Issues before the Eighteenth G.A.," *Int'l Conciliation*, No. 544, Sept. 1963, *op. cit.*, p. 186. Gross,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l Court of Justice," *Int'l Org.*, Vol. XVII, No. 1, Winter 1963, *op. cit.*, p. 1.

Gordon, *U.N. in the Congo*, *op. cit.*, p. 154.

(6) Gross,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nt'l Court of Justice, *Int'l Org.*, Vol. XVII, No. 1, Winter 1963, *op. cit.*, p. 2.

(7) *Int'l Court of Justice Reports*, 1962, p. 298.

Judge Bustamante의 反對意見.

(8)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ugust 9, 1960, Doc. S/4426.

E.M. Millers, "Legal Aspects of U.N. Action in the Congo," *A.J.I.L.*, Vol. 55, No. 1, Jan, 1961, *op. cit.*, p. 4.

研究論文

研究의 發議 및 勸告하는 것은 單只 勸告的인 것은 아니다. 憲章 第 18 條는 ‘重要한 事項’에 關한 總會의 ‘決定’을 處理하는 것이다. 이 ‘決定’은 어떠한 勸告를 包含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效率의이며 處理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 後半의 決定은, 憲章 第 18 條가 加盟國의 特權과 權利의 停權 및 加盟國의 除名과 財政問題를 包含하는 것이다.⁽⁹⁾ 또한 同 裁判所의 마지막 分析은 國際聯合의 經費는 “國際聯合의 目的을 為한 그들의 關係에 依하여” 恒常 分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見解를 披瀝하였다. 萬一 그들이 國際聯合의 目的內에 있다면,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에 依하여 採擇된 決議의 結果로서 招來되었으며, 事務總長의 指示에서 取하여진 措置는 그 權威下에 行하여 지며 그것은 “機構의 經費”가 適法이란 것이다.

同 裁判所의 審議 結果는 即時 總會에서 여러가지 다른 解釋을 誘發하였다. 大多數의 意見은 總會에 依하여 投票된 平和維持經費는 適法의인 “機構의 經費”였다는 것이며, 加盟國은 이 經費에 對한 賦課額을 支拂할 義務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法의인 見解를 支持하는 側은 總會에 依하여 投票된 分擔金은 다만 勸告의인 것이지, 總會의 多數決에 同意하지 않는 加盟國을 拘束할 수는 없다는 見解를 表明하였다. 이와 같은 問題는 第 17 次 國際聯合 總會에서 討議되었을 때에, 同 裁判所의 回翰이 勸告의인 意見이자 判決은 아니라고 主張되었다. 總會에서는 同 意見을 受諾한다는 決議를 賛成 76, 反對 17, 削權 8 票로서 採擇하였다.⁽¹⁰⁾ 蘇聯代表 「체르니세브」(P.M. Tchernyshev)는 「콩고」 및 中·近東에 對한 國際聯合의 活動은 全加盟國에 對하여 財政의in 責任을 課할 수는 없으며, 이 活動은 憲章 第 43 條를 違背한 措置임으로 憲章 第 17 條 2 項의 “機構의 經費”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다. 憲章은 加盟國에 對하여 다만 拘束力を 갖는 文書로서, 그것은 國際平和와 安全維持에 對한 第 1 次의in 責任은 安全保障理事會에 놓여져 있으며, 兵力使用權은 全的으로 安全保障理事會에 달려 있다고 主張하고, 蘇聯은 同 作戰費負擔에 對하여 參與치 않을 것이라고 強調한바 있음⁽¹¹⁾을 엿볼수 있다.

그러나 美國은 制限되지 않는 財政權이 總會에 賦與되어 있다는 것을 事實上 強力히 主張하였다.⁽¹²⁾

(9) Padelford, “Financing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52.

(10) *UNR*, Vol. 10, No. 1, Jan. 1963, *op. cit.*, p. 46.

(11) *UNR*, *Ibid.*, p. 48.

Gross,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Int'l Org.*, Vol. XVII, No. 1, Winter 1963, *op. cit.*, p. 16, 18.

“Issue before the Eighteenth General Assembly,” *Int'l Conciliation*, No. 544, Sept. 1963, *op. cit.*, p. 189.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55.

(12) Gross,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Int'l Org.*, Vol. XVII, No. 1, Winter 1963, *op. cit.*, p. 8.

이와 같은 國際聯合의 財政的인 危機는 同 裁判所의 勸告的인 意見이 一般的으로 受諾되지 않는 限, 同 勸告的인 意見에 依한 解決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¹³⁾

如何間에 「콩고」 및 中·近東의 平和維持活動費는 加盟國家에 무거운 財政的 負擔을 賦課하는 것이며, 特히 財政的인 寄附金을 納付함에 있어 財力이 豐富치 못한 國家에게는 그 負擔이 더욱 무거운 것이다. 이 經費에 對하여는 定期豫算에 適用되는 것 보다 다른 節次가 必要하다는 것을 受諾한 것으로, 그것은 可能한 特別賦課率을 審議할 것을 要請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21名의 實務團이 設置되어 同 分擔率의 基準을 設定하도록 委任되었다. 그러나 同 實務團도 實質的인 解決策을 講究치는 못하고 아직도 그 方法을 研究中에 있으며, 同 方案을 第19次 總會까지 報告키로 決定된바 있다.

各 加盟國의 寄附金納付를 要請함에 있어서 必要하다면, 憲章 第19條를 適用하는 可能性은 滯納分擔金을 完納시키는 措置인 것이다. 그러나 安全保障理事會는 加盟國에게 行動을 取할 수 있는 義務를 賦課시키는 紹對的인 權限을 갖는 것이나, 總會는 拘束力이 없는 勸告權 만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加盟國中에서 中·近東 및 「콩고」作戰費에 對한 自發的寄附金納付를 要請함에 있어서, 拘束力を 갖지 않는 勸告的인 意見이라는 點에서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인 同 經費滯納問題는 簡單히 解決될 可望性은 稀薄한 것이다. 즉, 蘇聯團에서는 國際平和와 安全을 為한 作戰에 所要되는 經費에 對하여는, 拒否權이 認定되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다룰것이지, 總會에서 다루 것은 못된다고 反對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同 經費의 酣出이라는 것은 또한 難關에 處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1962年에는 國際聯合에서 2億弗의 公債發行으로 同 經費의 赤字를 補填하려는 것이었고, 將來의 平和 및 安全維持費에 充當할 特別한 賦課率에 依據한 特別基金의 策定을 試圖하고 있다. 이와 같은 特別賦課率의 原則 適用問題에 對하여 加盟國에서 無視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첫째로, 各 加盟國에서는 어떤 國際聯合의 經費를 支拂하도록 期待하여야 하며, 이에 對한例外는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어떤 分擔率의 削減에 依하여 不足額이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同額은 廣範하게 加盟國에게 配分되어야 하지, 몇個國에 對하여 自發的 또는 其他 方法에 依하여 負擔되어서는 안된다. 셋째로, 機構의 見地에서 特히 生命에 危險한 課業에 對하여는 手當을 課한다는 것은 合理的일 것이다. 넷째로, 어떤 加盟國에서도 全體 賦課規模의 3分의 1以上은 支拂하여서는 안된다. 다섯째로, 經濟的인 成長率의 向上으로 加盟國의 支拂能力의 增進에 따르는 分擔率의 再調整을 하여야 될 것이다.⁽¹⁴⁾

(13) Gross, *Ibid.*, p. 10.

(14)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Vol. XV, No. 4, July 1963, *op. cit.*, p. 559.

研究論文

그러나 또한各國際機構의 歲收入을 增大시키는 方法도 考慮되어야 한다. 그中の 하나는 國際聯合을 支持하는 個人的 財政的인 支援方法의 하나로서 個人寄附에 依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個人寄附는 國際聯合의 活動을 實質的으로 意義 있게 推進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例를 든다면, 「록크펠러」二世(John D. Rockefeller, Jr.,)가 「뉴욕」의 國際聯合本部建立을 爲한 800 萬弗 該當의 土地 寄贈과⁽¹⁵⁾ 「포드」財團(Ford Foundation)의 國際聯合圖書館의 建立을 爲한 600 萬弗의 寄附⁽¹⁶⁾ 等은 높이 評價되고 있다. 또한 其外 少額의 寄附行爲는 兒童 및 避難民救濟 等에 提供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加盟國政府外에서 提供되는 各種 寄附金의 規模는 큰 것이 아니며, 오직 國際聯合의 各種 活動費에 對한 經費負擔은 加盟國에 依하여 提供되지 않으면 所期의 額數와 成果를 期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國際聯合이 直面하고 있는 財政面의 危機와 問題點은 全 加盟國의 協調와 이것을 支援하는 資金充當의 準備 없이는 解決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同 經費充當問題는 投票에 依하여 決定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外交的인 交涉의 方法에 依하여 解決策을 講究하는 것이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를 解消시킬 수 있을 것이다. 特히 國際平和와 安全維持에 責任이 있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積極的인 協調와 支援없이는 同 財政難局의 解消는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즉, 國際司法裁判所가 加盟國에 對하여 經費納付에 對한 “機構의 經費”라는 勸告的인 意見은 拘束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에 對한 各 加盟國의 協調를 다짐하는 效力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社會의 平和維持와 安全에 對한 國際聯合의 活動에 對한 全 加盟國과 아직 加入을 보지 못한 國家를 包含한 國際社會의 全幅의 인聲援과 協調에 期待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國際聯合의 定期豫算 以外에 支出되는 各種 經費에 對하여서도 定期豫算과 마찬가지로, 各 加盟國家가 義務的으로 納付할 수 있는 拘束力を 지닌 解決策을 模索하여, 全 加盟國에 對한 拘束力 있는 適用을 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므로서 同 問題의 隘路點을 打開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措置가 없이 同 經費의 滯納國家들에 對한 憲章 第19條의 制裁의 適用에 따르는 當該 加盟國 特히 安全保障理事會의 理事國인 蘇聯에 對하여 實質的으로 一律的인 適用을 하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다. 萬一 그와 같은 事態가 일어난다고 하면, 國際聯合에서 蘇聯團이 脫退하는 樣相으로 變質될 것이豫想될 것으로, 決코 同 財政危機는 全 加盟國

(15) *Everyman's United Nations*, 1959, *op. cit.*, p. 446.
YBUN, 1946-47, *op. cit.*, pp. 274-275

Eugene P. Chase, "The United Nations in Action,"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50, p. 92. Goodspe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t'l Org.*, *op. cit.*, p. 108.

Nicholas, *The United Nations: As a Political Institution*, *op. cit.*, p. 46.

(16) Padelford,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litics*, *op. cit.*, p. 565.

國際聯合의 財政危機에 對한 檢討

이 國際聯合의 發展과 國際社會의 安全 및 平和維持라는 大前提下에서 協調를 하므로서만 이 解消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協調 없이는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는 날이 갈수록 더甚하여질 것이며, 그렇지 않는 境遇에는 現在 國際聯合에서 進行시키고 있는 中·近東 및 「콩고」作戰軍의 活動 等을 中斷시키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際聯合은 國際社會의 平和 및 安全維持에 對한 努力과 活動에서 不得已 손을 뗄 필요로 國際聯合의 目的達成이라는 것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國際聯合에 對한 全人類의 希望을 박탈시키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란 同 機構의 存立에 關係되는 重大한 問題이다. 이에 따르는 解決策이 加盟國의 協調에 依하여 早速히 成立되므로서, 國際社會의 平和 및 安全維持活動은 앞으로도 繼續할 수 있을 것이며 期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63. 10. 1)

(筆者：本大學院 助教授)